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목록 (77)

I. 사회·정치개혁 관련 (7)

- 1-01 참여정부 정치개혁의 성과와 과제
- 1-03 반부패 투명사회 구현
- 1-05 포괄적 과거사 정리
- 1-07 언론분야 개혁
- 1-02 사법제도 개혁
- 1-04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
- 1-06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

II. 정책추진 관련 (47)

경제분야 (17)

- 2-01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 2-03 신용불량자 대책
- 2-0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 2-07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 2-09 농업 농촌 종합대책
- 2-11 자율 관리 어업 정책
- 2-13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 2-15 향만인력 공급체제 개혁
- 2-17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과 확산
- 2-02 금융시장 안정
- 2-04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
- 2-06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2-08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 2-10 쌀협상과 양정개혁의 완성
- 2-12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정리
- 2-14 선진한국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 2-16 해외자원 확보 경쟁

사회분야 (24)

- 2-18 노인복지 정책
- 2-20 기초생활 보장 강화
- 2-22 주민 서비스 혁신
- 2-24 건강보험 개혁
- 2-26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 2-28 여성인력개발
- 2-30 차별시정 강화
- 2-32 노사관계 개혁
- 2-34 교육격차 해소
- 2-36 사립학교법 개정
- 2-38 2008 대입제도 개선안
- 2-4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 2-19 장애인 정책
-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 2-23 국민연금 개혁
- 2-2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2-27 호주제 폐지
- 2-29 성매매 방지
- 2-31 비정규직 보호
- 2-33 일자리 창출
- 2-35 교원평가제 도입
- 2-37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 2-39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 2-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통일외교분야 (6)

- 2-42 참여정부의 북핵문제 해결과정
- 2-44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조정
- 2-46 국방개혁 2020
- 2-43 남북관계 발전
- 2-45 글로벌정상외교
- 2-47 이라크 파병의 성과와 교훈

III. 정부혁신 관련 (21)

- 3-01 정부혁신의 확산과 관리
- 3-03 정부 성과관리시스템 혁신
- 3-05 국민참여형 민원제도 개선
- 3-07 기록관리 혁신
- 3-09 참여정부 인사혁신
- 3-11 고위공무원단도입과 공직개방
- 3-13 균형인사 정책
- 3-15 제주특별자치도
- 3-17 교육자치 정책
- 3-19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 3-21 새로운 도전, 국가위기관리
- 3-02 정책품질 관리체계의 마련
- 3-04 정부조직과 기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 3-06 전자정부시스템의 구축
- 3-08 온나라 정부업무관리시스템
- 3-10 정무직 및 공공기관 인사시스템 혁신
- 3-12 공무원 성과관리 및 훈련시스템 확산
- 3-14 재정운영시스템 혁신
- 3-16 자치경찰제 추진
- 3-18 주민 직접 참여제도
- 3-20 정책홍보시스템 혁신

IV. 청와대 개혁관련 (2)

- 4-01 대통령비서실의 변화와 혁신
- 4-02 국정과제위원회의 설치와 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 현장예술인, 예술정책의 중심에 서다 -

2008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발 간 사

참여정부가 혁신과 통합을 표방하며 출범한 지 5년, 이제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국민들 앞에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난 5년은 말 그대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혁신과 통합의 길목마다 어김없이 반발과 저항, 분열 세력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왜곡과 호도 앞에 정부의 어떤 정책 활동도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혁신과 통합 과정에서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는 것은 참여정부의 의무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특정 정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추진 당시의 목표와 정책 환경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우여곡절과 해결과정, 해결방법도 가급적 상세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증언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이런 고민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추진되었던 핵심 정책 중 77개 과제를 선정, ‘정책과정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명칭을 ‘정책보고서’로 한 것도 일반 백서 처럼 정책의 진행 일지나 자료를 모아 놓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국민들에게 보고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정책보고서 작업은 청와대 비서관실별 집필 T/F팀과 정책기획위원회 주관으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보다 생생한 기록을 만들기 위해 전·현직 국무총리와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과 비서관, 전·현직 장·차관과 담당 공무원, 시민사회 단체, 국회의원 등을 직접 또는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회 속기록과 언론 보도, 각계의 성명서와 기고문을 수집하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책보고서는 일반 백서와 차별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정책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책추진과정의 우여곡절과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국정외 소중한 경험들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과정 중심의 기록은 ‘사적 기억’을 ‘공공의 기록’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과의 나열이나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의 다양한 찬반 논란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습니다. 때문에 77개 과제 중에는 성과가 미흡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자료와 논증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정치적 곡해를 바로 잡으려 하였습니다.

넷째, 차기 정부에 넘겨줄 인수인계서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권력만의 인수인계가 아닌 정책의 실질적인 인수인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나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정외 소중한 경험을 공유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정책보고서는 크게 사회정치 개혁, 정책추진, 정부 혁신, 청와대 개혁 등 4개의 대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대주제는 다시 사회정치개혁 분야 7개 과제, 정책추진 관련 경제 분야 17개, 사회분야 24개, 통일외교 분야 6개 등 47개 과제, 정부혁신 분야 21개 과제, 청와대 개혁 분야 2개 과제 등 6개 분야 총 7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작성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서려 있습니다. 집필을 책임진 청와대 각 비서관과 담당 행정관, 부처의 담당 공직자,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필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위원회는 물론 국정과제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과제들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외부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의 전·현직 장차관이 해당 과제를 직접 검토하거나 인터뷰에 적극 참여해 주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현직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해 주었습니다.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는 지난 2년 2개월 동안 정책보고서 집필 과정에 참여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전·현직 공직자, 국책 및 민간 연구소 관계자 분들께 발간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책보고서는 국민은 물론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 과제를 PDF 파일 형태의 CD로 제작 배포할 것입니다. 청와대 브리핑 및 정책기획위원회 홈페이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올려 무상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각 연구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의 재배포 및 연구자의 자유로운 인용도 허용할 것입니다.

정책보고서를 내놓는 지금 이 순간, 정책과정 중심의 새로운 백서 문화를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냉철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떠나 정책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으려 했던 참여정부의 노력과 진실이 있는 그대로 읽혀지기를 바랄뿐입니다.

우리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조언, 따뜻한 위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를 국민께 바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2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김 병 준

- 목 차 -

제1장 현장예술인 예술정책의 중심에 서다	1
제2장 참여정부의 출범과 새로운 예술정책의 모색	4
1. 그동안의 예술정책에 대한 반성	4
가. 예술정책, 지난 시대의 성과와 한계	4
나. 문예진흥원의 역할과 한계	6
2. 예술현장의 위기 : ‘뜨거운 감자’ 가 된 기초예술	11
가. 예술의 위기인가? 진흥정책의 위기인가?	11
나. 시대의 변화가 요구하는 것 : 자율성과 현장성	14
제3장 현장 중심의 예술지원기구로의 전환	16
1. 혁신의 위한 여정의 시작	16
가. 첫 발자국 : 민관 협의체계의 구축	16
나. 충돌하는 이해관계: 위원회 전환에 대한 찬반논쟁	20
다. 팔길이 원칙 : 위원회 전환에 따른 예술정책 기능조정	24
라. 전환계획의 마련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27
2. 공론화와 갈등, 그리고 합의	31
가. 기대와 우려 : 목청 높은 공청회	31
나. 반대와 설득 : 문화예술계로 확산되는 전환논의	35
다. ‘코드’는 없다 : 공감대의 형성	38
3. 국회로 간 예술가들	44
가. 기대와 좌절 : 법안의 무산, 보류, 폐기	44
나. 진보와 보수를 넘어 : 중단 없는 지지와 재상정, 그리고 의결	49

제4장 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56

- 1. 문화예술위원회, 기대에는 부응, 우려는 불식 56
 - 가. 출범 준비 : 설립준비단 구성·운영 56
 - 나. 아직도 남아있는 쟁점 : 위원회, 누가? 어떻게? 58
 - 다. 긴 여정의 끝 : 문화예술위원회 출범 60
- 2. 자율과 참여가 구현되는 예술정책을 위하여 64
 - 가. 새로이 생산되는 예술정책들 64
 - 나. 남아 있는 과제들 69

제5장 예술, 세상의 변두리에서 심장부로 74

【 부 록 】

-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일지 77
-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소위원 명단 84
- 3. 해외사례 : 잉글랜드예술위원회 107
- 4. 위원회 전환에 대한 문화예술인 의견 113

제 1 장 현장예술인, 예술정책의 중심에 서다

국가가 예술을 살릴 수 있는가? 아마도 이처럼 회의적인 질문은 없을 것이다. 남미의 시인 옥타비오 파스(Octavio Paz Lozano)는 이렇게 말했다.

“예술적 창조력이 국력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고 야만적인 편견이다. 어떤 이념의 허울을 쓰든 간에 정치권력의 본질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적이지 못하다. (……) 권력이 인간 활동을 침해할 때 예술이 창조력을 잃고 쇠약해지거나 몰개성적이고 기계적인 활동으로 변하는 사례들을 예시하기는 어렵지 않다.”

나무가 자라면서 줄기를 뺏는 것을 외부의 그 무엇이 조종할 수 없듯이 예술 역시 내재된 생명력의 분출에 의해 성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술을 위한 정책과 행정이 필요하다는 데 기꺼이 동의한다. 국가는 예술의 전개 과정, 미학적 엘리트의 형성, 예술경향들의 분화, 예술계의 지형도 등을 검토하고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예술을 살리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은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이러한 질문은 참여정부 출범 전후에 대규모로 분출된다. 그 시발점은 역시 현장 예술계였다. IMF가 겹치면서 한국의 예술가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다.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 비정상적인 체제에 돌입하게 되자 창작 장르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은 대부분 생계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 글을 쓰는 작가들은 문예지 외에도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는 사보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를 잃게 되었다. 시장 질서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연극계는 훌륭한 배우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무대를 등지는 일이 일어났다. 문학, 연극 외에도 미술, 음악 등 예술계 전반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각 예술장르의 필드가 초토화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예술현장에서 기초예술의 존폐에 대한 위기감은 나날이 고조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기존의 예술지원 정책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목소리로

이어진다. 당시 문화예술에 대한 개별적 지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배분이라는 형태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문예진흥원은 원장 중심의 독임제 체제로서 예술 현장과는 일방적이고 소극적인 관계에 머물러 왔으며, 현장예술인은 예술발전의 동반자가 아니라 기금이라는 형태로 전달되는 예술지원 정책의 수혜자로만 인식되어졌다. 따라서, 예술지원 정책은 예술현장의 제약요소와 현안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예술현장에서의 위기의식과 기존의 예술지원 정책의 한계는 새로운 예술정책의 탄생에 대한 논의로 옮겨졌으며, 참여정부의 출범은 그러한 논의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구체화시키게 된다. 자율·참여·분권의 참여정부의 3대 정책기조가 문화예술 분야에도 적용되면서 기존의 문예진흥원을 현장의 예술인들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예술정책 구조인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즉, 자율과 참여라는 정책기조는 문화예술행정의 역할을 ‘시혜자에서 매니저로!’, 진흥기구를 ‘독임제에서 합의제로!’ 바꾸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참여정부는 2005년 8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문화와 예술의 성장과 함께 자라날 소망의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비로소 국가가 예술을 성장이 정지된 겨울나무가 아닌 싹이 움트는 봄나무로 바꾸기 위한 기초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그 여정은 쉽지 않은 않았으며 오랜 산고와도 같았다. 훗날 김갑수 당시 문화관광부 예술진흥과장이 회고한 다음의 말은 위원회 전환을 위해 참여정부가 겪어야 했던 고뇌와 딜레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일궈낸 것은 자율·참여·분권이라는 철학을 굳건히 견지하고 정부와 문화예술계가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위원회로 전환할 때 가장 먼저 부딪친 장애는 현장예술인들의 반대였다. ‘연극인 100인 선언’이 불거지면서 예술위원회 전환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때 제기되었던 것이 ‘코드인사의 우려’였다. 문화예술계를 설득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을 위해 나섰고, 2003년 예술계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열었다. 당시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예술위원회 전환에 반대한 성균관대 정진수 교수를 대학로의 한 노천 호프집에서 만나 맥주잔을 앞에 두고 연극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한바탕 즉석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3

년 하반기쯤 범예술계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여 범예술인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적극 권하였다.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들의 반대의견을 극복해야 했다. 당시 국회는 예술위원회 전환을 예총 대 민예총의 대립구도로만 인식하면서 예술위원회 전환의 취지에 공감하지 못했다. 이때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는 물론 예총과 민예총을 초월해서 범예술계가 함께 협력한 결과였다.”

이 보고서는 참여정부 출범후 추진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과 관련된 내용과 쟁점들을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장 예술가가 중심이 되는 민간 자율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이 문화예술정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지난했던 갈등과 의견수렴의 과정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음미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후 유사한 정책추진과정에서 도움이 될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정부에 전달하는데 이 보고서의 주된 목적이 있다.

제 2 장 참여정부의 출범과 새로운 예술정책의 모색

1. 그동안의 예술정책에 대한 반성

가. 예술정책, 지난 시대의 성과와 한계

문화예술은 그 특성상 시장실패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다.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의 이론적 근거로, 문화예술의 이러한 특성을 들 수 있다. 즉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예술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경제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이 창출하는 사회적 외부효과를 생각할 때, 문화유산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국위선양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의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정부 지원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또 다른 지원 근거로 소득재분배를 들 수 있다. 평등주의적인 관점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은 최소한의 문화예술의 소비를 통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받아야 하며, 이 기회가 가격이나 소득, 교육수준 등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예술의 향수에 있어서 교육, 소득수준 등의 차이에 의한 불균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의 향수로부터 얻는 편익을 재분배한다는 관점에서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¹⁾ 문화예술은 내재된 생명력에 의해 성장하는 식물과 같으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지원'과 '정책'이라는 햇빛과 물이 필수불가결한 까닭이다.

해방 이후 국민의 정부 이전까지 우리의 역대 정권들은 창조적인 '문화정책'이란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문화정책의 이 오랜 부재는 결정적으로, 역대 정치권력이 '문화'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문화의 정치적 사회적 중요성을 '사회발전과 문화의 상관관계'에서 정의해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 같은 정의의 결핍 때문에 지난 50년간 정치권력의 인식체계 속에서 문화는 거의 언제나 불요불급한 장식적 활동 부문 정도로만 간주되었고, 적극적인 정책적 과제가 되기 어려운 부차적인 영역으로 여겨

1) 문예진흥기금의 지원효과 분석,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지는 오랜 인식 마비의 전통이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이 마비의 결과 역대 정권들은 국민 통합적 가치와 이념적 합의에 근거한 도덕적, 정신적 지도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적 집단적 삶의 가치 기준들이 실종되는 사회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문화 영역을 통해 국민 통합과 합의의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며, 그 물리적 지속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정당성의 위기에 시달리는 불안하고 위험한 정권이다.²⁾

한국에서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바라보고 '문화폭발' 현상을 처음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문민정부의 개혁세력이었다. 뒤이은 국민의 정부는 문화적 변혁을 강조하며 '문화부'를 '문화관광부'로 재편했고, 21세기형 산업의 주역으로 지식정보산업과 관광에 주목하면서 국가예산의 1%를 문화예산으로 확보하였다. 사회가 문화산업에 주목하는 상황은 예술가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문화의 소중함이 강조되면 될수록 예술가들의 창작 환경도 나아질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증액된 예산이 대부분 문화산업에 투입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문화의 산업적 효과가 강조되면서, 어느 순간 '문화산업의 범람과 기반예술의 황폐화'라는 모순된 현상이 초래되었다. 문화산업의 열매를 따기 위해 산업적 육성을 도모하는 동안, 그 원천 영역이라 할 예술은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 처하는 역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화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던 노력으로 인해, 문화예산이 늘어나고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커졌다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IMF 사태와 문화에 대한 정치인들의 표피적 이해로 예산과 정책을 산업적인 요소에만 치중해서 사용한 결과, 보다 본질적인 가치가 창출되는 기초예술영역을 방치했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2) 도정일, 「문화정책은 왜 필요한가?」 “문화정책은 왜 필요한가” 토론회 1998. 1

국민적 문화역량의 신장이 기초예술의 위축을 낳는 기현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 기현상은 심각한 ‘문화적 재난’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발원지는 방치하고 최전선은 확장하려는 정책은 비유하자면, 병든 뿌리를 내버려두고 열매만 많이 맺게 하려는 것과 같다. 강압적 근대로 외세 콤플렉스가 심하고, 압축 성장으로 토대가 취약한 부국의 길을 걸어온 나라에서 특별한 계기 없이 기초예술이 부강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초예술의 허약성은 문화적 황폐화를 가속시킨다. 뿌리와 줄기가 취약한 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수확하면 고사되는 이치와 같다.

국민의 정부는 ‘IT강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전성기’, ‘디지털문화 선진국’ 같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나, 막상 그 가치의 기반이 되는 예술은 고사 직전의 위기로 끌고 갔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문화적 변혁’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자, 국민의 정부는 2002년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의 시대에는 창의력의 바탕인 순수예술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며 핵심전략산업인 문화산업의 뿌리라는 인식”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02년 10월에는 순수예술지원 강화를 위해 <순수예술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000년대에 들어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시대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특정계층의 호사스러운 기호처럼 인식되던 문화예술이 바야흐로 전 국민의 생활 속에 침투하였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경제적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 창의성을 제공하는 요소로서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기도 하였다.

나. 문예진흥원의 역할과 한계 - ‘열매 없는 흥분’

우리나라에서 예술정책이 국가의 시책으로 채택되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정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3년 이 법에 근거하여 문예진흥원을 설립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을 설치하였다.

문예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원, 민족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및 발전,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 지원,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연혁 】

- '72. 8.14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법률 제2337호)
- '73.10.1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
- '79. 5.21 미술회관 개관(현 아르코미술관)
- '81. 4. 1 문예회관 개관(현 아르코예술극장)
- '92. 5.27 무대예술연수회관 개관(현 아르코문화예술연수원)
- '92.10. 1 예술자료관 개관(현 아르코예술정보관)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문예진흥원이 조성하고 운용해왔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지정문화재 등의 관람료에 일정률의 기금을 부가하여 모금한 것이었다. 물론 문예진흥기금은 이외에도 정부 출연금, 공익자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 사업수익 등 다양한 재원을 갖고 있었으나 이 중 모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문예진흥원은 1973년부터 2006년까지 총 17,272억원을 조성하여 9,365억원을 문예진흥사업에 사용하고 4,548억원을 적립하였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1973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조성액	1,021,985	136,540	84,425	98,263	96,524	95,761	95,303	98,409	85,089
사업비	411,286	93,518	41,190	33,634	35,988	84,090	118,960	117,865	103,622

※ 참여정부 기간인 2003년 이후 2007년까지 총 4,771억원이 조성되었으며, 5년간 총 4,605억원을 문화예술분야에 지원하였다. 특히, 2004년 기금 모금 폐지 이후 대체재원으로 2007년까지 3년간 총 1,968억원의 복권기금이 전입되었다.

1973년 이래 30여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걸쳐 문예진흥원은 문화예술진흥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기치로 내걸고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활동 지원을 펼쳐왔으며, 거기에 따른 일련의 성과는 어떤 이유로든 과소평가될 수 없다. 무엇보다 문예진흥원의 설립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정부주도 예술정책의 시발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경제지상주의가 팽배하던 척박한 문화환경 속에서 문예진흥원은 예술인들의 유일한 지지자요 동반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문예진흥원의 성과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문예진흥원은 운영상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예술계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문예진흥원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예진흥원 운영의 자율성이다. 둘째,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적법성이다.

문예진흥원은 문화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관료적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문예진흥원은 현장 예술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예진흥원의 기금 배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첫째,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심의기구가 있었지만 문예진흥원의 지원이 관변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편중되었다는 비판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둘째, 문예진흥기금은 그 용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실패한 문화관광부의 정책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예술계에서는 문예진흥기금이 문화관광부의 쌈지돈이라는 냉소적 비난이 일었다. 셋째, 문예진흥원의 활동이 기금을 단순 관리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업무로 한정되어 있어 해마다 달라지는 예술현장의 새로운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단순분배 형식의 관례적 지원이 주류를 이루었고, '소액다건식' 배분으로 인해 예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문예진흥원에 대한 예술인들의 불신은 날로 고조되어 갔다. 이런 연유로 예술계에서는 문예진흥원의 지원정책을 '열매 없는 흥분'이라

부르며 공공연하게 비난하였다. 문예진흥원이 예술계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자 1990년대 후반부터 민간자율에 의한 새로운 지원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현장예술인이 중심이 되어 문예진흥기금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문예진흥원 혁신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6월 16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문예진흥기금의 모금 중단이 중대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사건의 발단은 한 공연기획사가 헌법재판소에 낸 문예진흥기금 모금에 대한 위헌신청이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에 대한 위헌 신청 】

제청신청인 이종현은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이라 한다) 모집대상 시설인 공연장 등을 빌려 공연을 주관하고 입장객으로부터 위 기금의 수금 및 납부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1998. 6. 2.부터 1999. 5. 23.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문예진흥기금 명목으로 수금한 돈 가운데 도합 금12,305,134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청신청인은,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진흥법(2000. 1. 12. 법률 제6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19조, 제19조의2, 제28조 제1항·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하였다. 법원은 2002. 2. 7. 위 법 제19조 제5항 및 제19조의2 제3항에 대해서만 위헌제청을 하고 그 나머지 조항에 대하여는 신청을 기각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예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지정문화재 등의 관람료에 일정률의 기금을 부가하여 모금한 것이다. 문예진흥기금 모금 및 납부의무는 이러한 문화예술기관 운영자에게 있었는데, 운영이 어려운 일부 민간 기관 운영자의 경우 모금액을 축소하여 납부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이런 경우 문예진흥원은 문화예술진흥법의 별칙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별칙을 부과 받은 공연기획사가 문예진흥기금 모금 자체가 부당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한 것이다. 문예진흥기금을 문화예술 관람객으로부터 모금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대상이 되어야 할 문화예술기관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문예진흥기금 모금에 대한 위헌제청으로 인해 예술계에는 문예진흥기금의 재원이 조만간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었다. 문화관광부와 문예진흥원은 한편으로는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입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체 재원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예진흥기금 모금 중단 위기를 타개할 해결책을 찾는 것은 난망하기만 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2002년 정부가 준조세적 성격의 기금 모금 중단과 공공기금으로의 통합 운영방침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문예진흥기금 모금 중단이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와 문예진흥원은 2004년 말까지 모금 중단 유예를 받아내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할 수밖에 없었다.

2. 예술현장의 위기 : ‘뜨거운 감자’ 가 된 기초예술

가. 예술의 위기인가? 진흥정책의 위기인가?

참여정부가 들어섰을 때 예술 현장은 이미 위기의 꼭짓점에 달해 있었다. 실제 드러난 통계수치를 통해 예술현장의 상황을 짚어보면, 우선 예술행사 관람률과 예술인의 재정실태조사를 참고할 수 있다.

『문화향수 실태조사』(2003)에 의하면, 2003년 기준으로 예술행사 관람률은 1997년과 비교하여 영화부문을 제외하고 문학(13.5%→4.0%), 미술(27.3%→10.4%), 음악(13.3%→6.3%), 전통(15.4%→5.2%), 연극(20.2%→11.1%) 등 예술 전 분야에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2003)에 의하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한 푼도 없는 경우가 30%에 달했고 100만 원 이하의 수입이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학인의 경우 52%는 예술 활동 월평균 수입이 없으며, 전체의 94.5%가 월평균 수입 5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예술장르에 비해서도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예술의 현실, 곧 예술의 위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 결과는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예술의 가치를 폄하하는 사회적 냉대였으며, 다른 하나는 개별 창작자들에게 운명처럼 무게 지워진 좌절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예진흥기금 모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2003년 12월 18일의 헌법재판소 판결은 예술인들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폐지’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문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2003년 12월 18일(목)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제19조의2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중, 재판관 송인준 등 4인의 의견은 심판대상 법조항들이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것이고 한편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 등 4인의 의견은 심판대상 법조항들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것이다. 심판대상 법조항들을 위헌이라고 보는 이유는 두 개가 되어 비록 서로 다르지만 8인의 재판관 모두 심판대상 법조항들이 위헌이라는 결론에는 일치한다. (이하 생략)

< (구)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에 대한 선고결과,
선고날짜 2003-12-18 자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 요지’에 따르면, 문예진흥기금 모금을 폐지하는 이유는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의 소멸”이 아니다.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침해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의 관람료에 일정률의 기금을 부가하는 준조세의 형태를 가진 문예진흥기금이 조세 정의의 측면에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금 모금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게 폐지의 이유였다.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사업인데 영화나 연극을 보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형국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예술인들이 이러한 결정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예술인들이 불만을 토로한 것은 폐지에 따른 대체재원이 없다는 것이었다. 보완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의 문예진흥기금 폐지는 그 본래 의도와 달리,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의 소멸”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예술향수울 및 예술창작활동 수입의 급감이라는 예술 현장의 위기와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라는 예술지원정책의 위기가 중첩되면서 예술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의식이 예술계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예술의 존폐에 대한 위기감은 예술계의 보수와 진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2004년 4월 2일 예총·민예총 등 주요예술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기초예술살리기 범문화예술인연대>(이하 기초예술연대)가 출범하였다.

【 ‘기초예술’ 이라는 새로운 용어 확산 】

기초예술연대의 출범으로 순수예술이라는 기존 용어 대신 기초예술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여 확산되었다. 김형수 민족문화작가회의 사무총장은 문화예술진흥원 개원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순수예술과 기초예술 개념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순수예술진흥 종합계획』은 진흥사업의 목적을 ‘순수예술과 문화산업의 균형 발전’에 두고 있는데 이는 가치 서열이 생략된 사고이다. ‘순수예술’은 ‘상업예술’과 구별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문화산업의 기초를 강화하려는 진흥 목적과 충돌된다. 가령 ‘종합계획’은 순수예술을 ‘문화 창의력의 원천’이요,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형성하는 자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예진흥원 혹은 문화예술위원회가 감당해야 할 예술은 ‘비상업적 예술’이 아니라 당대문화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예술영역이다.” (김형수, 「예술진흥정책 30년에 대한 자성적 성찰과 위원회 전환의 문화정책사적 의미」, 『걸어온 길보다 더 먼 미래를 향하여』)

기초예술연대 조직 결성이 공론화된 것은 2004년 3월 중순이었다. 당시 기초예술연대 결성을 위해 30여개 단체가 참여한 실무자 준비 작업을 거쳐 같은 달 26일 참여단체 대표자 회의를 갖고, 기초예술연대 조직구성 원칙과 추진일정을 확정해서 바로 출범을 보게 되었다. 기초예술연대에는 전국의 60여개 주요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였다. 기초예술연대 출범식에서 황석영 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은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다음과 같이 강변하였다.

“30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 IMF 체제 이후 몇 년째 불황을 헤매고 있는 경제 여건 속에서 기초예술을 살리라고 주장하는 게 부질없어 보인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예술가의 ‘생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초로서의 예술의 ‘생존’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 황석영, 기초예술살리기 범문화예술인연대 출범식, '04. 4.2 >

여기에 언론계 내외의 이목이 집중되었음은 물론이다. 기초예술의 위기에 대한 이 같은 의식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신문의 사설과 칼럼은 당시의 분위기를 잘 전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기초예술의 위기는 해당 장르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의 위기를 넘어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공론화되기에 이르렀다.

【 ‘기초예술 위기’ 절규도 들어야 】

순수예술이 빈사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어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예총)와 민족예술인총연합회(민예총) 등 보수·진보를 망라한 60개 문화예술단체들이 ‘기초예술살리기범문화예술인연대’를 출범시킨 것은 존재의 갈림길에 선 순수예술 종사자들의 최후의 절규로 들린다. < 서울신문, 2004. 4.3 사설 >

【 기초예술은 배고프다 】

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의 새 회장이 된 소설가 황석영씨는 지난 9일 문예진흥원과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다른 문화 단체장들과 함께 국회를 찾았다. (중략) 문화예술진흥법안은 엄연히 민생현안에 해당한다. 그 법이 관할하게 될 문화예술, 특히 이른바 ‘기초예술’은 지금 가히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략) 지난달 말 발표된 ‘2003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예술인 1947명 가운데 30.9%가 창작활동과 관련한 수입이 전혀 없으며, 월수입 20만원 이하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지금 문화계는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기초예술을 살려야 한다!”
< 한겨레신문, 데스크칼럼 2004. 3.31 >

나. 시대의 변화가 요구하는 것 : 자율성과 현장성

기초예술의 위기와 문예진흥기금 모금 중단은 예술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 광부에게도, 예술지원의 집행기능을 담당해온 문예진흥원에게도, 기존의 실태를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성을 안겨주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풀어야 할 예술계의 당면 과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문예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대체재원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예술 정책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과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문예진흥원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낡은 시스템에 갇혀 있던 문예진흥원을 개편해야만 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예술계의 절박한 상황과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문예진흥원의 개편을 문화분야의 핵심적인 대선공약으로 설정하였다. 2002년 12월 대선에서 당선된 노무현대통령의 문화분야 선거공약은 '청와대를 문화의 상징으로'를 비롯하여 '문화예산 확충 및 문화향수권 제고', '문화예술의 자율성 및 다양성 확대', '지방문화 육성과 문화분권화 시대 정착' 등 도합 25가지였다. 그중 세 번째 '문화예술의 자율성 및 다양성 확대'의 세부항목으로 '순수문화예술진흥기구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현장 문화예술인 중심의 지원기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통령 취임 후 문화관광부 첫 업무보고에서도 재확인되었는데 '문예진흥원을 현장 문화예술인 중심의 지원기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그것이었다.

이는 예술지원정책이 이전 정부의 권력이나 인적 자원에 기반한 즉흥적 또는 단기적 부양책을 개선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 따라서 새로운 제도와 법률, 구조에 입각한 시스템화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은 거듭 확인한 것이었다. 현장의 흐름이 잘못되었는데도 낡은 시스템이나 제도의 한계 뒤에 숨어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단계에 와 있었으며 낡은 행정의 틀을 해체하여 현장에 맞게 재편해야 된다는 과제는 시대적 요구를 넘어 강제적 단계에 이르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문예진흥원은 '정책과 비전이 결여된 단순 기금지원 기구'가 아닌 '고도의 전문성에 의한 기초예술 활성화 기구'로 재탄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 장차 한국예술행정의 법과 기구와 제도가 혁신되기 위하여 2년여의 진통을 앓게 되는 기나긴 대장정의 씨앗은 이렇게 잉태되었다. 이것이 훗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의 출범을 보는, 참여정부에 의한 예술행정 혁신의 시작점이었다.

제 3 장 현장 중심의 예술지원기구로의 전환

1. 혁신을 위한 여정의 시작

가. 첫 발자국 : 민관 협의체계의 구축

2003년 4월, 문화관광부와 문예진흥원을 둘러싼 주변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자율·참여·분권을 3대 기치로 내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예진흥원의 개편 논의가 구체화된 것이다.

이창동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은 2003년 4월 14일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내부에 '민간자율추진 TF'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혁신의 대장정을 떠나기 위한 첫 발자국을 뗀 것이다. TF의 임무는 약 4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정의 혁신과정에서 문예진흥원에 대해 취해야 할 '입장'과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문예진흥원을 민간 합의제 위원회인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의 올바른 위상과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TF는 예술현장에서 제기되는 폭넓은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와 문예진흥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민간 전문가로는 NGO에서 관련분야의 심포지엄을 조직하거나 주도한 경험이 있는 자, 학술적 권위자로서 동일 과제를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자, 민간기업체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 역량을 확보한 자들이 참여하였다.

【 문화행정혁신위 본격 활동 】

이창동 장관 부임 이후 말로만 무성하던 문화정책의 민간이양 및 불합리한 행정관행 개선 등을 위한 방안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국가 문화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민간자율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처음 출범한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가 산하 6개 TF팀 담당자와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문화부는 문화행정혁신위의 각 TF팀 간사로 조한기(민간자율추진팀 지방분권추진팀), 김종선(행정수도문화기획팀, 정보공개추진팀), 원용기(조직문화개선팀), 용호성(조직구조혁신팀)씨 등을 선임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문화부 내부 인력들을 중심으로 TF팀 구성을 완료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각 TF별로 구성원 확정은 물론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 실·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민간자율추진팀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민간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에 위원회를 출범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화콘텐츠진흥원·방송영상산업진흥원·게임산업개발원 등 문화산업 지원기구의 민간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디지털타임스, 2003. 5. 21 >

하지만, TF 활동은 다양한 이견의 목청을 원활하고 깊이 있게 수용하고 논의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업무추진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던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문예진흥원을 위원회로 전환코자 하는 기구 혁신에 대한 논의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어 때로 졸속의 혐의를 받았다. 당시 문예진흥원의 문예진흥행정혁신위원으로 논의에 참여하였던 김형수는 그 점을 아래와 같이 회고하였다.

“일정이 촉박했던 이유는 세 가지였다. 우선 국민적으로 합의된 시기(정부 출범기)를 놓치면 논의가 정치적 역학관계에 포위되어 성격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둘째는 문화관광부 내의 사업혁신이 완료되기 전에 ‘기초예술 진흥기구’의 위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안 통과가 지체될 경우 ‘기초예술에 대한 진흥 기구로서의 지위’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세 가지 이유에서 속도를 가하며 진행되었다.”

< 김형수, 「문화예술위원회 출범이 갖는 의의와 한계」, 『2005 문화예술위원회 전환 범문화예술단체 제4차 연속토론회 발제자료집』, 2005. 5. 20.에서 인용 >

이러한 시간적 제약은 몇몇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미흡하게 만들었다.

“시간적 제약은 다음의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첫째, 문화적 혁신의 성격을 분명히 하지 못했다. 혁신의 종류를 편의상 ‘정치적 혁신’(정책 주도 세력을 당파적으로 교체하는 개혁)과 경제적 혁신(문예진흥을 전담하는 조직이 방만하거나 소모적일 때 집행 규모를 최소화시키고 지원 규모를 최대화하려는 ‘구조조정’) 그리고 문화적 혁신(급변하는 내외 환경에 적응하려는 행정 모델의 변화)으로 구별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문화적 혁신’이다.

둘째, ‘문화적 관점’의 본질이 간과되었다. 창조적 충동, 품격, 열정, 가치지향 등이 생략된 채 법조문과 규정 등 사무적 논의만 무성하게 되어 결국 ‘디테일의 숲’에 빠지게 했다.

셋째, 문화의 ‘가치 서열’을 생략시켰다. 한국의 문화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논의가 정작 문화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등한히 함으로써 기초예술의 진흥행정이 전체 문화체계 안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밝혀지지 못했다.

< 김형수,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 >

김형수가 지적했다시피 혁신프로젝트에 대한 시간적 제약은 범문화예술계의 자발적인 에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위원회 전환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생산적 토론이나 창조적 제안이 나올 기회를 앗아가는 이유가 되었다. 문화관광부와 문예진흥원, 예술현장의 각기 다른 반대명분을 불식해나가기 위해서는 혁신의 본질을 이해시키

는 것이 관건인데도, 개혁의 속성을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속성으로 추론케 함으로써 그 본질과 무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시간적 제약에 따른 이상의 문제는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을 포함한 '문예진흥 행정의 혁신'이 '국가경제의 21세기적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고 추진 되어야 한다는 보다 큰 차원의 당위성과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의 핵심자원이 물질적 토대보다 정신적 토대에 있다는 것을, 학술력 보다 창조력에 있다는 것을, 이성의 능력보다 감성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기초예술 진흥이 단지 국민을 위한 문화복지의 일환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기초예술의 붕괴로 지식기반산업의 형성과 파급구조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인식시키는 데에는 미흡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논의는 문예진흥원의 범위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문제를 끌어들이며 나날이 증폭되어 갔다. TF에 참여했던 민간 전문가들 가운데에는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여러 진흥기구들 간에도 바람직한 방향의 역할 분담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초예술을 전담하는 기구와 산업예술을 전담하는 기구의 위상 및 지원형태를 동일한 컨셉으로 설계할 수 없다는 점, 지자체 차원의 예술 지원과 중앙 기구의 예술 지원 간의 역할 분담 방식, 또 진흥 기구들에 따라 지원방식('투자성 지원'과 '회수성 지원' 등)의 차등이 필요하므로 예산 편성에서 '기초예술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등의 문제들까지 다루기에는 TF에 부여된 시간이 턱없이 모자랐다.

이 과정에서 5대 유엔사무총장(1982.1 ~ 1991.12)이었던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Javier Perez de Cuellar)가 1998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수행하면서 결론지었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실패하는 이유는 발전프로젝트에서 인간적 요소 - 다시 말해 문화의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관계, 신념, 가치, 동기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복합체로서의 - 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끝없이 환기되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민간자율추진 TF'에서는 예정된 기한 내에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이에선 전환의 당위성 및 필요성과 더불어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위원구성 방법 등 구체적인 전환 계획도 포함되었다.

나. 충돌하는 이해관계 : 위원회 전환에 대한 찬반 논쟁

시대의 요구라는 점에서 위원회 전환의 당위성은 분명했다. 사실은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을 준비한다는 TF활동의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위원회 전환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과 초기 운영과정의 파행에 근거하여 위원회 전환에 반대하는 논리를 비롯하여 반대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찬반 논쟁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각각의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수렴하고 정리함으로써 위원회 전환을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TF활동은 먼저 관련 주제를 두고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용을 수합하는 단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의 예술정책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전환의 고리로서 문예진흥원을 민간자율위원회 체제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은 참여정부 이전부터 이미 제출되어 있었다.

2001년 6월 14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문예진흥원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주최: 국회의원 이미경, 최용규, 정병국, 남경필)가 열렸다. 여기에서 박인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기획실장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의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문예진흥원을 민간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같은 공청회에서 이대회 광운대 교수는 '문예진흥원 발전의 기본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민간위원회로의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안으로 문예진흥원을 책임운영기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위원들이 근시안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리멸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에 대한 반대의견 】

민간의 위원은 기본적으로 기금운용,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최종 책임부분에서 약점을 보일 수 있다. 기금 고갈, 국가의 장기 문화정책 등에 국가 차원의 책임자인 문화관광부 만큼 관심을 보일 수 없다. 결정권을 쥔 민간인 위원 자리를 놓고 몇몇 영향력 있는 집단들이 자리싸움을 벌인다면 이 위원회는 지리멸렬해질 가능성이 높다.

< 이대회, '문예진흥원 발전의 기본방향, 문예진흥원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입장은 문화관광부 내에도, 문예진흥원 내에도, 그리고 예술계 현장 내에도 있었다. 문화관광부 내 반대 측은 변화된 문화예술 패러다임 안에서 새 임무를 찾지 않은 채 국고를 포함하여 소관하고 있던 업무를 떼어준다는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닐까, 등의 여러 의문과 불안은 위원회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견해로 나타났다. 코드인사의 혐의도 반대 명분이 되었다. 역시, 위원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하는 게 관건이었던 것이다. 현장예술인들의 자발적인 모임 내에서 위원들을 천거하자는 의견, 추천위원을 통해서 뽑자는 의견, 야당 쪽 추천 인사와 여당 쪽 추천 인사를 함께 구성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지만 의견 조율은 쉽지 않았다. 이는 야당이 TF에서 만들어놓은 안을 수정하는 이유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노조를 비롯한 문예진흥원 쪽 반대세력은 구조조정에 대한 염려가 핵심이유였다. IMF 때 이미 한 차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50여명에 가까운 인력의 해고를 목격했던 터라, 위원회 전환이 몰고 올지 모르는 구조조정의 바람이 달갑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정규직은 잦은 부서이동으로 업무에 상대적으로 둔한 경우가 있고, 계약직은 한 자리에서 몇 년씩 일을 하면서 업무에 능하고 역량이 뛰어난 경우가 있다 보니, 해고의 불안을 느끼는 일부 정규직과 정규직 전환에 기대를 건 비정규직들이 위원회 전환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뉘기도 했다.

한편 예술현장에서는 예술행정의 수혜를 받는 세력이 교체될 것을 염려한 일부 예술인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다. 3자 내의 이러한 갈등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구체화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바라보는 각각의 입장과 더불어 보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라는 구조자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이는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은 기존의 원장 중심의 독임제인 문예진흥원을 다수의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조로 변경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었다.

위원회 제도와 독임제를 비교했을 때, 다양한 견해를 가진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민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회 제도의 큰 장점이다. 그러나 책임한계가 모호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위원들 간 갈등 조정장치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지적되었다. 예술계 일각에서는 창작에 전념해야 할 예술인에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지원정책을 맡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심지어 '예술인이 예술인 위에 군림하여 예술을 재단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³⁾ 는 주장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위원회 논의는 위원회 제도가 가지는 본질적인 장단점 보다는 기존 문예진흥원이라는 독임제 조직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진행되어야만 했다. 이에 따라 TF활동에서는 원장 중심의 기존 문예진흥원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다.

먼저, 기존의 이사회 제도를 기초로 한 원장 독임제는 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해당 분야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며, 자유롭고 다양한 문화예술계의 의견 수렴이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구조인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심의 결정은 제한된 심의시간과 위원들의 일회성 참여로 현장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으며, 채점제가 가지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비해 논의 과정상 충분한 논의가 부재하며 정책적 기능과의 상관성을 기초로 한 심의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반해 앞으로 신설된 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 예술지원 정책을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다양하고 복잡한 예술

3) 정진수, 「문화예술위원회, 무엇이 문제이며 대안은 없는가」, 『바른사회시민사회 토론회 발표문』, 2003.10.14.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들이 정책수립부터 지원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일관되게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요구와 밀착된 지원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며, 충분한 토론과 수시 논의구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 구조자체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문화예술위원회 전환과 관련된 찬반논의를 검토한 후 '민간자율추진 TF'에서는 최종적으로 문예진흥원 혁신의 기본방향을 민간위원회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는 다음의 세 가지였다.

첫째, 기존 문예진흥원의 문제점의 극복이었다. 문예진흥원은 예술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보다는 정부정책의 보조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면이 있었으며, 지원정책은 30여년간 이어져 온 관행으로 편중·왜곡 지원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예술인과 협력하여 독자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기금의 관리와 배분에 국한된 소극적인 지원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둘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민간위원회는 변화하는 예술환경에 현장예술인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예술정책에 대한 의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논의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단기간의 혼란이 예상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예술지원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혁신은 속성상 기존의 관행과 인습에 커다란 도전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불안과 오해가 불가피한 것이나, 문화가 국가 경쟁력 좌우하는 시대에 문화적 성숙을 이뤄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인 까닭이었다.

셋째, 예술인 중심의 민간위원회는 예술지원시스템을 현장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하게 예술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자율·분권·참여'라는 참여정부의 3대 국정원칙이 예술현장 전반에 확산되었고 결국 예술행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팔길이 원칙 : 위원회 전환에 따른 예술정책 기능조정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이 결정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예술정책에 있어 문화관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예술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현장예술인이 주도적으로 예술지원 정책을 결정하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은 예술 지원업무에 있어 양자간의 기능 중복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에 대해 '민간자율추진 TF'는 정부부처와 예술위원회의 관계와 관련된 원칙을 설정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영화진흥위원회, 방송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며, 국외사례로는 영국 예술위원회(ACE)와 미국 국립예술기금(NEA)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영국의 문화체육부와 예술위원회 사례는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계정립, 지원 사업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1946년에 설립된 영국의 예술위원회의 경우,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에 해당하는 영국의 문화매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가 전략적인 기본정책을 수립하면 예술위원회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접근성(Access), 다양성(Diversity)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DCMS에서 내놓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예술위원회에서 집행하게 되는 것이다.

【 각국의 문화예술지원기구 】

▶ 사례1 : 영국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ACE)

최고의사결정기관은 Council은 우리나라 이사회와 비슷하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인데 위원장과 위원 모두 문화매체체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15명 가운데 9명은 지역예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고 주로 전문예술 행정가로 구성되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예술 장르에 대한 대표성은 없다. Council meetings은 연간 약 5회 개최되며 국가예술정책 수립,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기관사업과 예산 승인 등을 한다.

▶ 사례2 : 미국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형식적인 구성은 우리나라의 위원회 제도와 비슷하나 실제적인 운영 면에서는 문예진흥원 제도와 유사하다. 상위기구인 National Council of the Arts에 정책적인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과 자문을 하며, 원장이 모든 집행권한을 가지고 지원대상선정도 원장이 위촉한 전체 및 분야별 위원회(panel)에서 담당한다. 위원회는 어느 정부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위원회로서 독립적인 기구구성을 위한 조직구성 형식이다. 의장을 포함하여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장은 상원의 동일홀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임기는 4년이다. 나머지 20명의 위원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은 14명, 의회가 지명하는 위원은 6명으로, 투표권 없는 2년 임기이다. 의회가 지명하는 6명은 하원 의장 2명, 하원 소수당 원내총무 1명, 하원 다수당 원내총무 2명, 상원 소수당 원내총무 1명이다. Council meetings은 공개적으로 열리는데 연 3회 개최하며, informational sessions는 비공개이다.

이러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TF는 정부부처와 예술위원회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정부가 예술분야의 지원 대상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예술을 통제한다는 오해를 낳을 뿐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따라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의해 민간 주도의 예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쳐가는 영국의 예술위원회 사례 등은 한국의 문화예술위원회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 그동안 팔길이 원칙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도 새로이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책임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국 문화매체체육부는 영국 예술위원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정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

영국의 문화체육부, 예술위원회 그리고 예술단체간의 관계와 기능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이다. 몸과 팔과 손의 관계처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몸으로서 일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예술행정체계의 운영원리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accountability)도 강조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기금이 조성, 운영되는 만큼 구체적인 지원정책은 위원회가 결정하지만 평가(Accessment)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팔길이 원칙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환 취지와도 맞닿아있다.

이상과 같은 검토결과 문화관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의 관계에 대한 결론은 김갑수 당시 문화관광부 예술진흥과장의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체제의 출범은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기반한 문화관광부와 위원회간의 역할분담을 전제로 한다. 정부(문화관광부)는 국가차원의 예술 인프라 조성 및 제도개선, 평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현장의 창작활동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리는 한다’는 것으로 정부는 예술현장에 대한 지원 결정과정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나 평가를 통해 공공재원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여부를 중점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술위원회에 자율권을 부여하되 정부는 성과평가에 중점을 두면서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이듬해 2004년 6월에 발표된 예술분야의 중장기 비전 및 세부 추진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인 「새예술정책」에 잘 드러나 있다. 여기에서는 정책대상과 범위, 중앙정부의 역할, 정책 추진체계 및 정책수단 등에서 이전의 예술정책과 다른 새로운 예술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역할이 이전의 감독자이자 집행자에서 조정·평가자이자 기획자로 전환되어야 하며, 정책결정에 있어 관주도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예술정책의 방향(「새예술정책」, 2004. 6)】

구 분	이전의 예술정책		새 예술정책
예술정책 대상과 범위	· 전통적 기존 장르 중심	⇒	· 탈장르 및 실험적, 대안적 · 예술중시 등 대상범위 확대
중앙정부 역할	· 집행·규제·감독자	⇒	· 기획·조정·평가자
정책방향	· 창작활동중심 지원 · 주류, 기성 작가위주 지원	⇒	· 창작, 매개, 향유부문 균형발전 정책 · 비주류, 신진작가 지원 강화
추진체계	· 관주도의 정책결정 · 중앙(정책결정)과 지방정부(정책 집행)의 서열화	⇒	· 민간의 정책결정 역할 강화 · 중앙, 지방 정부 및 민간과 분권 및 협력
정책수단	· 국고, 기금에 과도한 의존 · 현행법, 제도의 예술환경 변화 수용 한계	⇒	· 민간기부 등 재원 다각화 · 예술환경 변화에 맞게 법, 제도의 지속적 정비

라. 전환계획의 마련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한다는 기본방향이 확정되자 본격적으로 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여기에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과 더불어 위원회의 명칭 및 법적 성격, 직무범위, 위원회 구성방법, 위원회 구성시기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비록 ‘민간자율추진 TF’라는 다정한 이름으로 모여 앉은 3자 테이블은 외형상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듯 보였으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환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각각의 내면은 어쩔 수 없이 긴장하고 있었다. 문화관광부 관점, 문예진흥원 관점, 민간전문가들의 관점이 충돌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었다. 문화관광부는 참여정부의 의지를 살리면서 제도와 기구의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며, 문예진흥원은 소속 기관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만큼 새로운 예술정책의 장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오를 높이고 있었다. 또 민간 전문가들은 갈수록 복잡 다양해져 가는 사회 현안에 대해 행정조직이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지하는 영역이 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민간 자율의 폭을 최대한 넓히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요 내용에 대한 3자간의 논의는 중단 없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계획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었다.

주요 논의내용을 보면, 먼저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는 기존의 정부 산하기관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간자율기구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의 기금의 관리·배분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구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현장 예술인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문화현장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예술지원기구의 위상을 가진다고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범위도 기존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문화예술 정의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된 정책형성, 결정, 집행 및 평가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토사항 중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것은 역시 위원회 구성방법과 관련된 문제였다. 여기에는 위원회 구성대상, 위원 수, 위원자격, 선임방식 등이 논의되었다. 이 중에서 구성대상, 위원자격, 선임방식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으며, 법률안 개정과 관련해서는 위원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가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이었다. 이는 위원회의 효율을 우선시 하는 입장과 현장예술인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입장의 대립이었다.

외국 모델을 연구하여 이상적인 안을 제출하려는 입장에서는 위원 수를 6, 7인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장르이기주의 등을 이유로 현장예술인을 위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했다. 또 다른 입장은 현장예술인을 위원회에 흡수하는 것만이 진정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으며, 위원의 수는 장르를 망라하여 15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것이었다. 이들은 장르이기주의가 만연하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이전까지 예술인들이 예술정책에 대해 냉소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참여를 통해 예술진흥정책에 대한 예술인들의 저항감을 극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후자의 주장에는 그동안 예술지원정책이 겪었던 추진전략상의 오류를 반성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결국 위원의 수는 절충안으로 11인이 되었다. TF에서는 지금까지의 예술정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에 기초하여 현장예술인을 위원회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현장예술인을 위원회로 흡수하는 안을 기본으로 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결과였다.

이상과 같이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위한 '민간자율추진 TF'가 설치된 이후 12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 석달여의 내부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문화관광부는 2003년 7월에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주요골자 】

- 위원회 명칭 및 법적 성격
 - 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위원회 중에서 문화예술위원회로 결정
 - 법적 성격은 법인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외에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 적용
-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위원회의 직무
 - 지원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위원 3인 이상이 서명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방법
 - 위원 수 : 11인(임기는 3년)
 - 위원장(상임) : 위원간 호선 (부위원장 없음, 유고시 연장자 대행)
 - 소위원회 :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 사무처장(상임) : 위원 동의 하에 위원장 제청, 문화관광부장관 임명*
 - 감사(상임) : 위원장 제청, 문화관광부 장관 임명
 - 사무처 조직 : 위원회 사무의 보조

○ 위원회 운영

- 회의의 공개 : 소위원회를 포함한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성과평가 :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사업성과를 측정·평가, 위원회에 통보
- 위원의 직무상 독립 규정

○ 위원회 구성시기

- 법 시행시기 : 공포 후 6월 경과
- 위원회 설립 : 법 시행 1개월 이내

2. 공론화와 갈등, 그리고 합의

가. 기대과 우려 : 목청 높은 공청회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놓고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3년 7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첫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문화예술계의 뜨거운 관심 아래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대체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의 전환을 골자로 한 법령의 취지에 공감하였지만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맞서기도 했다. 새로 설립된 문화예술위원회의 정체성 문제, 위원회 제도의 책임성과 효율성 논란, 위원장과 위원, 사무처장의 선임절차, 영화진흥위원회 사례를 통해 본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내용을 듣고 첫 토론자로 나선 방현석 중앙대학교수는 법령의 취지에 대한 공감을 표시한 뒤 내용의 내실을 다질 것을 주문했다. 그는 '문화의 시대'라는 구호가 범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예술이 폐허 직전에 오게 된 상황을 각성시키며, 위원회가 실천력 있는 대안을 창출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위원회는 예술 창조의 영역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예술 정책은 정부의 여타 기관과 지자체 등의 역할과 상호 연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예술 수용은 여타 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창조의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방현석 교수는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함을 역설했다. "위원회의 정체성이 한 공동체의 정신사와 미적 성취의 수준을 담보하는 핵심인 기초예술에 대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기구가 되어야 하며, 이를 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명칭에서부터 정체성과 위상이 불분명함을 지적하고 '국가문화예술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위상과 정체성이 불분명할 경우 문화예산을 비롯한 정책적 차원의 희망이 거품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희섭 문화정책연구소장은 위원회의 전환이 문화예술계

의 참여와 자율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것에서 모든 의의의 출발점을 찾았다. 그러한 의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방식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여부, 위원회 직무에 대한 독립성 보장 여부, 그리고 현행 법률을 뛰어넘거나, 정부에게 주어진 국민 대표성의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위원회 전환의 취지를 훼손할 만큼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 조항”이 법률 속에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 전환을 반대하는 논리를 ‘문화예술계 내의 주도권 문제’와 ‘업무의 비효율성’, ‘책임소재의 불명확함’으로 압축한 뒤, 문화예술계의 지형도가 냉전체제를 벗어나고 있으며, 사소한 문제들은 규정을 통해 명확히 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계가 성숙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희섭 문화정책연구소장은 세부 조항에 대해 개정안 제23조 12 제③항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라는 부분을 위원회 구성 방식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논의를 모아 임명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임을 말했다. 또한 제23조의 13(기금관리기본법과의 관계 등) 제①항에 나타난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4월 3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 역시 위원회 전환의 취지를 훼손할 만큼의 규제와 간섭 조항에 해당한다고 하며,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조현영 예총 정책연구위원은 위원회가 안고 있는 세부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했다.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으로써의 선택에 대한 문제와 기금운영의 각종 제약들, 또한 연구와 정책 개발 기능의 강화를 통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할 등을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개정법률안이 관(진흥원)에서 민(위원회)으로의 “색깔만 바꾼” 것 같다고 하면서, 오히려 위원회 체제로 인해 관(문화관광부)의 개입과 통제의 범위가 확대 심화될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현행 진흥원의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 운영의 문제임을 직시하여야 하며, 그 모든 변화의 키를 쥐고 있는 위원의 선발과 지원금의 분배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전환을 1년간 유보하고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조희문 상명대학교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사례를 통해 위원회가 가진 문제점과 대안을 개괄적으로 살폈다. 우선 영화진흥공사가 영화진흥위원회가 되면서 발생한 운영의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 파행이 발생하였음을 상기시켰다. 위원의 구성 과정에서 발생했던 대결 양상과 정책과 의사 결정, 사업집행을 둘러싼 마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구조와 인적 자원의 성숙도를 꼬집었다.

“당초 문화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는 10인의 위원을 보수적 인사 3인, 진보적 인사 3인, 중립적 인사 4인의 비율로 구성하고자 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로 바뀌었고, 위원들 간의 원만한 논의와 결정을 거친다면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었다. 그러나 운영의 실질적인 주도권은 진보적 경향에서 장악했고(위원장 신세길, 부위원장 문성근 체제), 이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측에서는 위원회 구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영화진흥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논란 끝에 1999년 9월 6일, 10인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상임위원(박종국 위원장, 조희문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으나 이번에는 문성근, 정지영 등 이른바 진보세력 측 위원들이 반발,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해 연말 무렵에는 조희문 부위원장, 김지미, 윤일봉 위원 등 3인을 제외한 나머지 7인 위원이 모두 사퇴하는 사태로까지 악화되었다.”

<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사례를 통해서 본 ‘위원회’의 문제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공청회 토론 자료집』 2003. 7. 25 >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문화예술위원회 전환 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다. 첫째는 위원 구성의 문제로 위원에 따라 사업 운영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었다. 사업의 대상, 우선순위, 집행 방식의 결정 등 입장이 다르다는 것 외에도 이념적 문제들까지 연결되어 의사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 진단했다. 다른 하나는 책임 소재의 부분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 구조상 정책 결정이 다수결에 의해 확정되고 나면 ‘민주적 의결’만 남고 그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도 없다는 것이다. 즉, 사업은 있고 책임은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화진흥위원회의 사례를 들며, 문예진흥원의 위원회 전환을 “지나치게 성급하고 단선적인 발상”이며, “현실과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함께 1기 영화진흥위원회의 의원으로 참여하였던 이용배 교수는

「원활한 민간위원회 전환을 위한 제언 - 영진위 경험을 바탕으로」라는 글에서 이를 '갈등을 통한 성장'이라 평가하고 있다.

“영진위 출범 초기의 개혁 보수(혹은 신규) 세력 간의 노선 대립 속에서도 영진위의 출발은 의욕적이었으며, 몇 가지 소중한 성과들도 이뤄냈음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것들은) 스크린쿼터제 현행유지 건의, 의결사항 정책수립 반영, 구 ‘한국청소년 단편영화제’를 제25회 한국독립단편영화제(경쟁)로 육성 결정, ‘영화산업진흥5개년계획’을 포함한 적극적인 마스터플랜의 제시, 영상전무투자조합의 제작지원을 통한 영화제작자본의 안정화, 미디어센터의 의욕적인 출발과 영화아카데미의 통합운영, 영진위의 개혁적 행보를 지원했던 단체들의 역할…….”

< 이용배, 「원활한 민간위원회 전환을 위한 제언-영진위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의 원칙과 방향』 문화정책포럼. 2005. 1. 6 >

공청회를 통해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이는 문화예술위원회 전환 논의에 발전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가운데 위원 상호간의 갈등봉합은 시급한 조정이 요구되는 부분이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해결이 없을 경우, 위원회 전환 자체에 대한 불신이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 보완하기 위해 여러 번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화관광부의 추진 경과에 대해 이창동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의 예술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자율적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공포된 직후부터 여러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여 총 10회 이상의 토론회 등을 가졌으며, 6월 27일에는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21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 심사를 거쳐 위원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하면 8월 초순경 최종적으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준비기간을 거쳐 8월말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 중앙일보, 2003. 9. 20 >

나. 반대와 설득 : 문화예술계로 확산되는 전환논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구체화되자 문화관광부에서는 입법예고(03. 8. 2)와 함께 2003년 8월 2일부터 22일까지 예총, 민예총, 문화연대, 전국문화원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계에 대한 의견수렴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전환논의는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따른 정부차원의 설득과 대응 노력도 본격화 된다.

첫 문화예술계에서의 논의는 2003년 9월 1일, 평론가, 대학 연극학과 교수, 연출가 등이 참여해 만든 '대학로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였다. 여기에서는 위원회 전환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우려가 동시에 표출되었으며, 이후 문화예술계에서의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는 당시 만연했던 보혁갈등에 편승해 진행되었으며 신구세력 간의 주도권 다툼과 그에 따른 소외의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논의자체는 대외적으로 공식화되지는 않았으며 문화예술계 내부에서 산발적이며 개별적인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 9월 19일 연극인 100인으로 구성된 '연극인 비상대책위원회(가칭)'가 발표한 성명은 위원회 전환의 우려와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출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 땅의 척박한 예술창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연극예술인들은 최근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부 소속 예술관련 기관 및 단체장들을 민예총이라는 예술계의 특정 소수 조직의 구성원 일색으로 인선하고 있는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중략) 더구나 정부의 유일한 순수예술 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경우 원장, 총장 및 이사진 마저 민예총계열의 인사들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개혁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탈바꿈시키고자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함에 이르러는 이것이 현장 예술인들의 참여를 확대키 위한 것이라는 표면상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술지원을 통해 민간 예술인의 활동마저 특정 세력으로 하여금 지배케 하려는 배면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지 예술계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이들은 우려하고 있다.

< 연극인 비상대책위원회, 2003. 9. 19. >

'연극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은 위원회 전환을 바라보는 일부 문화예술계의 우려가 노골화된 사례로서, 방치할 경우 전환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확산시

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성명 발표 이후 위원회 전환과 관련된 오해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직접 나서서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설득과 설명 작업이 진행되었다. 성명 발표 다음날인 2003년 9월 20일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은 직접 연극인 10여명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학계(9. 26, 차관), 극단대표(10. 21, 예술진흥과장, 공연예술과장)와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9월 23일에는 예총회장과 10개 회원단체장과의 장관 간담회가 한국의집에서 개최되었으며, 문학계(10. 1, 예술극장), 미술계(10. 2, 예술극장), 음악·무용계(10. 7, 예술극장) 간담회가 잇따라 열렸다. 또한 예총 10개 회원단체별 추천인사(25명) 대상 설명회가 10월 13일 세종홀에서 열렸고, 같은 날 예술진흥과장이 대학로포럼에 참석해 법 개정 취지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리에서 이창동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진흥원을 민간주도의 문화예술위원회로 개편하면서 문화예술지원과 집행기능은 민간에 넘기고, 대신 보다 높은 층위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엄정하게 평가하는 쪽으로 정부 기능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문화예술위원회의 추진배경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견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봐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에 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 진정한 의미를 알리는 일의 일환으로 이견의 목청을 돋우는 연극인들의 공연을 관람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대해 ‘반발을 희석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일각의 폄해가 없지 않았으나, 대부분은 ‘현장 겨안기’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는데 한 언론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놓기도 하였다.

22일 저녁 서울 대학로의 한 노천 호프집에서는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과 정진수 성균관대 교수가 맥주잔을 앞에 두고 연극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한바탕 즉석 토론을 벌였다. 이날 만남은 이 장관이 문화부 출입기자들과 근처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문예진흥원 문예극장에서 연극 ‘당신, 안녕’을 관람한 후 가진 뒤풀이에 정 교수가 참석해 이뤄졌다.

같은 장소에서 공연되고 있는 연극 ‘이혼의 조건’ 연출자이기도 한 정교수는 지난 달 ‘연극인 100인 선언’을 주도, 이 장관의 ‘문화계 코드인사’를 비판한 바 있다.두 사

람은 30여분 간 덕담을 섞어가며 문예진흥원을 예술위원회로 개편하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장관이 먼저 연극계의 보혁 갈등 움직임과 관련, “고향인 대구에서연극배우로 잠깐 활동한 적이 있고, 친형도 연극인이어서 평소 연극계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방심한 부분이 있다”며 “문화정책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공무원 주도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므로 민간 위주로 바뀌야 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문화예술 지원정책 결정을 예술가들에게 맡겨놓으면 오히려 획일주의, 권위주의를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대화가 끝난 후 ‘문화예술위원회, 무엇이 문제이며 대안은 없는가’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장관에게 전달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평일이나 주말에 대학로나 국립극장, 영화관을 예고 없이 혼자서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날도 기자들과의 단체관람에 앞서 ‘이혼의 조건’을 혼자 보았다. 이 장관이 자신의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든 인사들이 주도하는 공연을 관람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반발을 희석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눈길도 있으나 문화인 출신의 첫 문화부 장관으로서 현장을 찾아다니며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는 모습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평가가 주류였다.

<한국일보, 2003.10.23>

문화관광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이 표면적으로 민간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표방하고 있으나, 예산승인권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위원선임은 예술계의 파벌조성이나 위원들 간의 예산 나눠먹기로 변질되지 않겠냐는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정책과 집행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문예진흥기금의 운용에 있어 기획예산처나 국회의 심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되고 동 재원이 민간자금화될 경우 기금예산에 대한 위원회의 자율성이 커질 것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파벌이나 장르의 대표가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

은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투명성 및 객관성을 요구하게 되고 기금지원사업을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사전적 통제방식보다는 사후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기금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에 위원회의 자체평가시스템과 더불어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과평가제도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중앙일보, 2003. 9. 22 >

다. ‘코드’ 는 없다 : 공감대의 형성

‘연극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 발표 이후 이어진 문화관광부의 적극적인 홍보 및 설득과 더불어 예술현장에서의 자체적인 의견조율로 문화예술계는 서서히 의견의 통일을 이끌어내기 시작했다. 물론, 의견을 조율하기까지 숭한 시련과 고뇌가 있었으나 예술현장 내에서도 주류는 위원회 전환이 시대의 요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측이었고, 찬성세력은 위원회 전환의 성공적인 향방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위원회 전환의 근본적인 취지를 설명하며 반대세력을 설득해 나갔다.

이러한 징후는 2003년 10월 14일에 ‘진정한 문화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연극과 교수 연대’ 44명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문화예술위원회 조속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문화관광부가 “적극적이고 진솔한 자세로 홍보 및 설득”을 통해 민간참여제도인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중략) 전체 예술인들의 공론을 모아도 힘든 개혁조치들이 표류하게 되는 기형을 낳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파행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21세기 시민문화의 시대를 향해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판단을 게을리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여러 선의의 개혁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현 정부가 도리어 미숙한 정책진행으로 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물러나는 불명예를 짊어질 것인가. 예총과 민예총의 편가르기적 사고, 어느 한쪽의 피해의식의 반복 등이야말로 소위 가장 척결해야 할 수구적 태도가 아니겠는가.

< 전국연극과교수연대, 2003. 10.14 >

2003년 10월 22일에는 위원회 전환 당사자인 문예진흥원이 직접 주관하는 심포지엄이 마로니에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은 ‘문예진흥원의 위원회 전환과 예술진흥정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당시의 기사들은 문예진흥원 개혁에 주목하며, 아래와 같이 부분적인 반발이 있지만 민간중심의 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이 대세임을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 민간중심 위원회체제 전환 문화예술활동 부처간 협력 】

22일 오후 서울 대학로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문예진흥원 주최로 열린 개원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문예 진흥원의 위원회 전환과 예술진흥정책의 발전 방향’은 관계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형수 시인은 ‘걸어온 길 보다 더 먼 미래를 향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예진흥원의 민간을 중심으로 한 합의기구인 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은 관습적인 문화행정체계를 변화시키는 일 뿐만 아니라 급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부응하며 낙후된 우리 문화정책과 행정의 틀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미술평론가 임정희씨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과 바람직한 운영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은 문화예술계가 문예진흥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기금 운용계획이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로 기획예산처에 의해 조정, 변경되는 관행에 대해 문화적 예외를 당당히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이어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활동의 기획, 집행과 정에서 문화부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와의 협력, 통합이 가능하도록 부처 내, 또는 부처 간의 경계를 넘어서도록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현영 예총 문화정책연구원은 ‘향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방안 및 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문화예술정책은 정부의 행정목표에 국한하는 것을 벗어나 시민과 예술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남북문화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문화교육, 국제문화교류, 생애학습으로의 문화교육 등 8개 항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 문화일보, 2003. 10. 22 >

또한, 뒤이어 발표된 연극인들의 성명은 위원회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상당부분 진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연극인 100인 성명을 통해 보혁논쟁을 본격화하고 위원회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연극인들이 잇따라 위원회 전환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다. 2003년 10월 31일 발표된 한국연극협회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환지

지 성명'이 그것이다. 이때 연극인 100인 성명에 참여했던 인사 가운데 일부는 연극 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성명에 참여한 것은 '문화관광부 인사'의 문제제기와 '의견 수렴을 촉구'하는 것이었으나, 문화예술위원회에 반대하는 뜻으로 비춰져 오해가 있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 '100인 서명' 연극인, 예술위원회 찬성 잇달아 표명 】

문화예술계 편중인사와 문예진흥원의 위원회 체제 전환을 둘러싼 연극계 보혁논쟁에 불을 붙였던 '연극인 100인 서명'에 참여했던 연극인들이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찬성의 뜻을 잇달아 표하고 나섰다. 심재찬 한국연극연출가협회 회장은 '문화예술위원회 논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연극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예술위원회를 추진하기 시작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토론하고 알리는 과정을 생략한 채 느닷없이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겠다는 일방적인 선언은 우리 예술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심 회장은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뜻있는 연극인들이 '연극인 100인 서명'에 동참했던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왜곡돼 전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연극계에 혼돈과 갈등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민간예술인이 주도하는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은 연극인은 물론 문화예술인 모두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연극계의 발전을 위하여 새롭게 탄생하는 문화예술위원회를 위해 차분하게 뜻을 모아야 할 것"을 촉구했다.

연극평론가이자 공연예술계 환경개선을 위한 모임인 대학로포럼 대표인 한상철 한림대 교수(영문과) 역시 '100인 서명의 참뜻이 왜곡되는 상황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100인 서명에 참여한 것은 합리적 인사를 해달라는 뜻을 거리낌 없이 밝힌 것"인데 "서명을 주도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인사가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100인 서명 자체가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소회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극단 수레무대의 김태용 대표도 "당시 이창동 문광부 장관의 편협스러운 인사 기사를 읽고 난 후였기에 그에 대한 경종의 의미로 서명에 참여한 것이지 문화예술위원회 철회에는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을 협회 홈페이지에 밝혔다.

< 연합뉴스, 2003. 10. 29 >

위원회 전환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합의는 이후 급물살을 타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범 예술인 3000인 성명”이 발표되는 데 이른다.

우리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전국예술인 연대’에 동참하는 예술인들은 현시대에 걸 맞는 민주적 제도인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을 적극 촉구한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 문화예술진흥원의 수직적 관료중심체제를 개선하여 수평적이며 민주적인 민간예술인 중심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중략) 더욱이 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바꾸는 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계의 많은 의식의 개혁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 사회는 1990년대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중략) 스스로 돌이켜 보건대 우리 예술인들의 의식이 그러한 시대정신에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말의 회의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시대에 예술은 이러한 시민의식을 선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우리 문화예술계도 발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중략)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곧 이러한 시대정신, 예술정신에 대해 반대하는 것과 같으며 과거의 암울했던 권위주의체제의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범 예술인 3000인 성명, 2003. 11.5 >

이렇듯 각 단체장들과 예술인 3000명이 참여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전국예술인 연대’는 2003년 11월 15일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오해와 갈등, 각종 이해관계로 얽혀 있던 문화예술계의 찬반논란을 대동적 합의라는 큰 틀로 끌어안았다. 언론도 서명에 동참했던 연극인들이 잇달아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음을 알리며, “서명문 원안은 전환 자체의 반대라기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촉구하는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풀이했다.

한편, 문예진흥원은 소그룹별 회의를 통해 의견에 일치를 보고자 했다. 단계별로 부장 회의, 팀장 회의를 거쳐 종국에는 직원 전체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찬성파는 위원회 전환의 취지와 혁신의 당위성에 대한 대화를 시도했다. 본래 반대파가 소수였는데 노조의 움직임에 동조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터라, 위원회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는 것에 수긍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그 결과 상당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차원의 입법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2003년 8월 2일에 입법예고가 된 이후에 11월 11일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11월 17일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이 이루어졌다. 개정안은 당초 「민간자율추진 TF」에서 마련한 안에서 일부조항이 추가되거나 변경되고 대부분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정부제출안 추가 및 변경 주요내용 】

-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지원기구로 확대하고, 지원기구로서 재단법인의 설립근거를 규정
- 위원회·지방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및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
- 사무처장 임명권을 문화부장관에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 전환을 둘러싼 찬반논란의 혼란은 2003년 11월 25일, 이념과 장르, 사조와 정치성향을 달리하는 문화예술계가 공통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종결된다. 예총과 민예총, 문화연대, 대학로 포럼 등을 포함한 각 장르별 29개의 단체가 대학로 바탕골소극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전환 환영 의사를 밝힌 것이다. 특히 이들의 공동기자회견은 예술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냉전적 대결의식을 벗어나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미래를 열었다는 점에서 위원회 전환의 미래를 밝게 했다.

이들이 발표한 ‘문화예술계연합성명서’는 “문화예술정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환영한다.”, “국회는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며 논지를 이어갔다. 이들은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은 문화적 다양성, 창의성, 자율성 신장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폐지된 문예진흥기금의 대체재원 마련과 열악한 문예 환경의 개선, 또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대안을 위원회에서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당위를 펼치기도 했다. 성명서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원하는 위원회의 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예진흥원은 다양하고 복잡해진 예술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틀로 거듭나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제 독립제 구조의 문예진흥원 틀 아래서 급변하는 문화 환경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점에 다다랐다.

둘째, 그동안 문예진흥원이 단순분배식 지원을 주요 임무로 한 기구였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예술지원 정책에 의한 적극적이고 선택적인 기획지원을 주요 임무로 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문예진흥원은 나눠먹기식 기금 배분기구가 아닌 예술진흥 중추 기구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그 근원적인 처방이 바로 현장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인 것이다.

셋째,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문화예술계의 현안을 논의하고 지원정책을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위원회제도야말로 예술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요구하는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 주도의 문예진흥원이 민간 주도의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을 넘어 새로운 예술정책을 정립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넷째,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정치·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예술적 가치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어느 나라나 이를 위해 예술지원 기구를 정부조직과 독립하여 존재토록 하고, 정부는 지원정책 결정 및 집행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견지하고 있다.

새로 출범할 문화예술위원회는 이러한 ‘팔 길이 원칙’에 충실한 기구로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기구가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침체의 늪에 빠진 예술계를 위해 새로운 예술정책을 창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원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원 선임 등 여러 문제들을 대국적인 입장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

사실 문화예술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은 기존 이해관계의 해체를 가져오는 것이었으므로, 그 시작부터 저항에 부딪치리라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문예진흥원이 5천억원에 이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영역의 지원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야 하는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중요한 역할을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와 현장예술계가 이뤄낸 극적 합의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설득노력에 더해 예총과 민예총이라는 기존의 문화예술계의 이분구도를 초월한 범예술계가 함께 협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국회로 간 예술가들

가. 기대와 좌절 : 법안의 무산, 보류, 폐기

문화예술계의 통일된 의견을 전달한 만큼 국회에서 법안이 쉽게 통과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2004년 3월로 폐막되는 16대 국회 회기 내 통과는 점점 불투명해졌다.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관련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 】

- 제1차 회의(04. 2. 10) : 무산
- 제2차 회의(04. 2. 19) : 보류
- 제3차 회의(04. 2. 23) : 공청회(문화예술인 의견 수렴), 보류
- 제4차 회의(04. 3. 9)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수정 의결

2004년 2월 10일 예정되었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첫 회의는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었다. 2월 19일 열린 두 번째 회의는 장관과 예술진흥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장관과 예술진흥과장은 예술인들의 의견과 문화예술위원회의 취지와 배경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참석한 대부분의 의원들 또한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위원 선임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에 부딪혔다. 구체적으로는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또한 예술계로부터 지지·찬성에 대한 의견은 들었으나 상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로 인해 충분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통과시키기에는 무거운 사안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공청회 등의 과정을 다시 한 번 거치는 것을 전제로 보류되었다. 또한 이날 회의는 당시 논란이 되었던 방송법중개정법률안과 함께 다뤄짐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지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2월 23일 열린 세 번째 회의는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영수 한국연극협회 이사, 김용태 민예총 이사장, 박명학 문예진흥원 노조위원장, 성기조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장, 이성립 한국예총 회장이 참석하였다.

김영수 이사는 공청회를 통해 위원회로 전환될 경우 특정 세력에 의한 위원회 장악과 불분명한 책임소재 등을 예로 들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문예진흥원의 위원회 전환 취지가 당초의 목적대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첫째, 자율성과 독립성의 확보이다. 특히 자율성은 위원회 제도가 존립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위원 및 위원장의 신분보장, 심의를 비롯한 위원회 직무의 독립, 기금사업과 예산권에 대한 상대적 자율권의 확보 등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와 위원회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영국의 DCMS(문화매체체육부)와 ACE(예술위원회) 관계처럼 기금약정(Funding Agreement)을 맺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견제와 균형이다. 위원회, 기능별 소위원회,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사무국을 두어 기능을 분산한다. 정책기능과 심의기능, 집행 및 평가기능을 분산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이유는 위원 간의 갈등구조 발생을 방지할 뿐 아니라,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되는 등의 비효율적 측면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능별로 최대한의 자율적 결정구조를 가지도록 하되, 위원장의 조정기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민주화이다.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다양한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예술창작과 향수기능 모두를 충족케 하며,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채널의 평가 등을 통해 사업목표에 대한 환류(feed back)장치를 강화한다.

넷째, 전문성이다. 집행기능을 전담하는 사무처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과 현장 경험의 강화가 필요하다. 전문 인력의 지속적 수급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한다. 또 지식경영체계의 도입을 통해 조직원의 지식 공유·소통·발전을 통해 전문화된 조직구조를 지향한다.

다섯째, 미래지향성이다. 위원회는 조직의 쇄신과 위상에 대한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미래 한국문화를 선도하는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향후 국가적 차원의 기구로 격상시켜(대통령의 직속기구) 명실공히 국가의 문화정책과 진흥을 전담하는 총 본산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김용태 이사장은 문화예술인들이 정책의 수혜자에서 정책의 집행자로 바뀌는 것과, 국가의 문화예술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는 거시적인 특성을 지적하며 사소한 문제점들을 상호 이해를 통해 불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명학 위원장은 실무 경험을 전제한 뒤 업무의 비효율성을 들며 위원회 전환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성기조 회장과 이성림 회장은 각각 문화예술계의 자율성과 거시적 미래상을 이야기하며 지원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성기조 회장과 이성림 회장이 이날 언급했다시피, 문예진흥원은 1998년도 이후 구조조정 및 지원사업개선 등 자구적 노력을 진행했음에도 범 문화예술계로부터 큰 변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얻는 데 미흡했다.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적 의미의 이미지 쇄신이 요청되는 단계였다. 이와 함께 지원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원심의 역시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 제시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특히 심의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진흥원장 중심의 단일제 구조로는 문화예술계의 참여와 합의 도출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1990년대 이후 문화부(현 문화관광부)가 설립되면서 문화관광부와 문예진흥원이 문화예술진흥업무를 관장해왔으나 양 기관 모두 관료적 행정기관으로서, 급변하는 예술현장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의 한계를 가졌다. 순수예술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정책수립 및 집행 등과 관련한 양 기관의 역할분담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예진흥사업의 효율성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문예진흥원은 인사 및 예산 승인 등의 업무가 문화관광부에 예속되어 있어 사업운영의 자율성이 떨어지며, 현장예술인의 제한적 참여와 조직구조의 계층화로 인해 업무추진의 전문성과유연성이 미흡했다. 따라서 문화환경의 변화를 자율적으로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어서 벌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주로 문화예술계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이라는 큰 원칙을 전제로,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몇몇 진술인들은 문화예술계의 현실과 시대 조류를 역설하며 이번 회기 내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이동으로 인해 문화의 비중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며, 특히 문화예술분야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담당할 미래지향적 전문조직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4년 2월 25일에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술인으로 참여한 예총, 민예총 대표 등 각계 문화예술인들이 개정안의 회기 내 조속 처리를 요청하면서, 개정안과 관련된 국회의 어떠한 제안사항에도 동의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16대 국회가 막바지에 치달은 2004년 2월 27일 세실 레스토랑에서 다시 한 번 29개 단체를 포함한 40여개 예술단체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의 중심 내용은 법 개정안 통과와 그에 부정적인 위원에 대한 낙선운동 선언이었다. 이미 문화예술계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합의 이전 수차례 발표된 반대 논리를 근거로 문화예술계의 내부 합의를 의심하며 통과를 미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예술단체는 기자회견에 이어 숨 돌릴 새도 없이 국회를 방문하였다. 2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3당의 문광위 간사, 문광위 위원장, 3당 원내대표실 등을 돌아가며 성명서를 전달하고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였다. 문화예술계 원로들이 각 당 대표들을 만나 논의를 진전시키려는 노력도 계속되었다. 일련의 과정 때문인지 불가능해 보이던 분위기가 다소 돌아서는 듯했다. 3월 2일이 국회 마지막 날이었으나 3당이 합의하면 그날 하루 동안에 소위부터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모두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또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3월 2일,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국회로 향한 문화예술인들은 또다시 좌절했다. 당시의 어수선한 정치적 상황은 소위나 상임위가 열릴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다급하게 찾아간 국회의장실에서는 직권상정이 되려면 3당 총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듣고 돌아서야 했다. 문화예술계 대표들은 각 당 원내대표실과 의원 총회장을 쫓아다녔으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으로 결국 회기는 끝나고 말았다.

이후 현안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임시국회가 개최되었다. 그 현안은 사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문화예술인들은 국

회 면담을 위하여 3월 5일 발표된 40개 문화예술 단체와 3천5백명의 문화예술인 서명이 첨부된 범 문화예술계 탄원서를 제작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금번 임시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범 문화예술계 탄원서'가 그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을 금번 국회 회기 내에 꼭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에 대한 범 문화예술계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목소리를 내던 문화예술계가 처음으로 한 데 모여 같은 목소리를 내어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위원회 전환에 대한 범 문화예술계의 열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켰던 위원회 위원 선임방법 등 법안의 중요 쟁점에 대해 정부와 문화관광위 법안심사 소위의 여야 실무자간 의견 조정이 이미 끝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미룰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문화예술위원회 전환 논의가 이미 1년여의 기간을 보낸 상황에서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폐기되고 다시 원점에서 차기국회로 넘겨진다면, 문화관광부의 직무 조정 등 위원회 전환과 연계된 예술정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됨과 아울러 모금폐지에 따른 대체 재원확보, 2004년, 2005년 복권기금의 문화예술재원 확보 등 산적한 현안에 효율적인 대처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등 위원회 전환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고 또 한해를 위원회 전환 논의에 묻혀 보낼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넷째, 2003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문화예술인의 70%가 월평균 100만 원 이하의 창작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예술인의 사회적 평가나 작품발표 기회가 더욱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예술의 위기가 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문화예술계에 상당한 좌절감을 안겨줄 것이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함께 창작의욕의 저하 등 문화예술계가 극도로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단순히 문화예술계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그 동안 굴절된 문화정책을 바로잡고 성숙한 시민사회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의 처리가 단순한 당리당략을 떠난 국가 대계의 문제임을 각별하게 인식하여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개정 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청하오니 부디 문화예술계의 열의와 여망을 이루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3월 9일에 열린 4차 회의는 문화예술계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탄핵 정국이라 일컬어지는 당시 정치적 상황에 밀려 문화예술인들은 다

시 한 번 좌절을 맞보아야 했다. 이로써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끝내 본회에 올라 가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문화예술계의 절박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국회에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좀체 자기공간을 벗어날 줄 모르던 문화예술인들이 나서서 숨가쁘게 움직였건만, 그 보람도 없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결국 탄핵 정국과 맞물려 헛수고 면피용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한 문화예술인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뒤에도 문화예술계가 한 번 더 우롱당하는 일이 있었다. 다시 임시국회가 열린 것이다. 이미 결판이 나 전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킨 바로 문제의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위해서. 그래 결과를 뻔히 예측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기에, 또는 예술인들은 적극성이 없어 국회가 열렸음에도 포기해 버렸다는 억지 비난을 방지하느라, 3월 8일 다시 몇 명의 예술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국회를 방문하는 수고를 하였고, 그것으로 길고 지루한 구걸행각을 끝냈다.”

< 오세곤, 연극평론가 >

나. 진보와 보수를 넘어 : 중단 없는 지지와 재상정, 그리고 의결

대통령 탄핵안 가결, 17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2004년 5월 29일부로 제16대 국회가 폐회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2004년 4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제17대 국회 재입법 추진을 결정함과 동시에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생략할 것을 협의했다. 또한 법안의 내용은 제16대 국회상정법안과 동일하게 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발맞춰 문화예술계는 16대 국회의 경험을 토대로 제대로 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나타났다. 특히 16대 국회의 수정을 거치면서 여러 문제점을 안게 된 법안을 원안대로 올리되 더욱 철저한 준비와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과정에는 문화예술계의 내부적 성숙이 자리한다. 예술계를 양분했던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틀이 눈에 띄게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장르를 뛰어넘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서로 협조할 수 있는 통로도 꾸러지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목적을 넘어 근본적으로 문화예술의 환경을 새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합이었다.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기초예술살리기 범문화예술인연대’(이하 기초예술연대)이다. 예총과 민예총 등 60개 단체가 참여한 기초예술연대는 2004년 4월 2일 마로니에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포럼을 개최하며 출발하였다.

(...) 한국의 기초예술은 현재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창조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간에 한국의 예술가들은 ‘IMF 상황’을 맞았으며 세계를 향한 도약의 발판은 커녕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낡은 기반마저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의미 있는 작품이 출현했을 때 응당 있어야 할 반향과 사회적 공명의 틀마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술에 대한 우리 시대의 감식안 자체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 이 같은 현상이 빚어낼 결과란 비단 문화적 재앙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사회의 문화체계 안에서 가장 원초적인 생명활동인 예술이 위축되면 문화생태계는 파괴되고 문화적자원도 고갈됩니다. 예술의 성장 없이는 인문학의 발전도, 문화산업의 성장도, 지식산업은 물론 일반 제품업계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 국민적 문화역량은 비약적으로 성장한 반면 기초예술은 위축되는 안타까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기초예술살리기 범문화예술인연대’를 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예술의 실질적인 주역들이여! 다들 이곳에 와서 한 편의 작품을 창조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이마를 모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 조각 ‘똥’이 아니라 지 사회가 진정으로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 「기초예술살리기 범문화예술인연대」 출범 선언문, 2004. 4.2 >

이후 기초예술연대는 각종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문화예술정책 전반에 대한 민간의 논의를 활발하게 꾸려나갔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정계를 방문하여 문화예술계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재상정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우여곡절 많았던 그간의 고난을 보상하듯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5월 10일에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규제심사가 완료, 5월 12일 법제처에 제출했다. 5월 25일 차관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국무회의를 거쳤다. 그리하여 2004년 6월 3일 17대 국회에 제출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2004년 9월 1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후 9월 15일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 법안 심사 추진경과 】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04.5.25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제17대 국회 제출 : 2004.6.3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2004.9.13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개최
 - 법안심사소위 위원 : 우상호(위원장), 김재홍, 이경숙(이상 열린우리당), 박형준, 정종복(이상 한나라당), 천영세(민주노동당)
 - 1차 회의 개최 (2004.9.25) : 문화예술계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결정
 - 2차 회의 개최 (2004.11.17) : 문화예술계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 <안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구성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문화관광부 장관 단독 위촉 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한 장관 위촉 건 논의)
 - 3차 회의 개최 (2004.11.29) :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 수정의결

법안심사소위 1차 회의는 문화예술계의 의견수렴 과정과 문화예술계의 합의를 인정하나, 보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다시 한 번 문화예술계 인사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17일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는 문화예술계 인사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이성림 예총 회장과 김용태 민예총 부회장, 오세곤 기초예술연대 연구위원장, 문예진흥원 사무총장이 참석하였으며 문화관광부 예술국장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위원 구성 방안에 대한 의견이 주로 오갔으며, 장관의 단독 추천 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한 장관의 위촉 건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위원 선

임에 대하여 “방송위원회와 같이 국회에서 일부 추천하는 방식이 거론될 수 있으나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지녀야 하는 문화예술의 고유의 특성상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16대 국회에서 제기한 국회 추천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 선임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된 자를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11월 29일 3차 회의는 문화관광부 예술국장과 문예진흥원 사무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위원 선임방안 및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시되었다. 수정안은 2차 회의에서 제시된 추천위원회 구성의 법률적 근거를 법률과 시행령에 나누어 적시하는 것과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조항(23조 18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004년 12월 7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시한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시한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 구성시 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임기 3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위원회 직무는 정부안대로 “문화예술이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 변경,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 규정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했다. 특이한 점은 남북문화예술교류 및 국제문화교류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조달 의무조항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위원회가 의결한 대안을 법 조문 및 자구 수정을 거쳐 의결하였다. 내용으로는 안 23조의 10이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의 성과를 문화관광부 장관이 평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의 위치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직무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보다 앞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을 뒤로 옮겨 제23조 16으로 배치하는 것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다.

2004년 12월 29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관광위원회가 제출한 대안을 법제사

법위원회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한 내용으로 의결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 14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같은 달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그리고 최종적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5년 1월 27일, 드디어 공포(법률 제7364호,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5907호 게시)되었다.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주요골자 】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한국문화예술 위원회를 둬(제23조 제1, 2항)
- 위원회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의 균형 있게 포함되어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제23조의4)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 1인(상임)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직무대행은 연장자 순(제23조의5, 제23조의6)
- 위원은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으며, 본인 또는 친족관계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제23조의9, 제23조의10)
- 위원회의 직무(제23조의11) :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위원 3인이상이 심의·의결을 요구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제23조의12)
-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구성·운영(제23조의13)
- 위원회의 사무보조를 위해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1인)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제23조의14)
- 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해 문화부장관이 임명하는 감사 1인을 둬(제23조의15)
- 문화부장관은 위원회 사업 및 활동에 대한 기금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년도 3월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가능(제23조의16)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해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 설립 가능(제4조 제1, 2항)
- 위원회·지방 위원회 및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제23조의17)

문화예술진흥법 개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나는 이것이 자율·참여·분권의 3대 가치를 문화정책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참여정부의 굳은 정책의지의 결과인 동시에 정부의 국정철학이 정책변화의 가장 중요한 추진동력임을 확인시키는 사례라는 점이다.

아울러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문화예술인들이 자신과 관련한 일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피력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동안 자신의 작업실에서 자신의 세계에 함몰되었던 예술인들이 스스로가 처한 현실적 상황을 혁신하는 일에 나서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위원회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국가의 문화예술을 맡기는 것인 바,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와 발언은 가장 중요한 동력인 것이다. 이것은 기초예술연대의 방현석 정책위원장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확인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이 과정에서 예술계는 전례가 드문 행동일치를 보여주었다. 장르와 예술적 경향이 다른 예술계 인사 3000여명이 법 개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그 대표들이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적극성을 발휘했다.

좀처럼 작업실을 벗어나지 않는 예술가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행정부와 국회, 정당을 뛰어다닌 것은 예술가들이 체감하고 있는 위기감의 반영이었다. 예술이 배부른 시대가 특별히 있었던 것이 아님도 알고 있고 여간한 가난과 외로움에는 단련될 만큼 단련된 예술가들이 최근 들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과거의 그것과 다르다.

창작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현재 예술가들이 느끼는 위기감의 핵심은 창작의 환경이 주는 어려움이나 궁핍이 아니라 장르자체의 공동화현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기초예술 분야들은 장르 자체의 붕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현장의 예술가들은 느끼고 있다. (...) 개인의 희생과 열정을 담보로 획득한 예술적 성취들이 사회적 공명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만큼 예술가들에게 잔인하고 절망스러운 것은 없다. (...) 세계가 온통 문화예술의세기라고 주장하는 시대에 한국의 기초예술은 기이하게도 장르자체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 방현석, 기초예술연대 정책위원장 >

제 4 장 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1. 문화예술위원회: 기대에는 부응, 우려는 불식

가. 출범 준비 : 설립준비단 구성·운영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된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는 것이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행하고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2005년 1월 27일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8월까지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위원선임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해야 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2005년 2월에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준비단(TF)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과 관련된 제반 준비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설립준비단은 예술국장을 단장으로 기획총괄팀, 규정제정·실무팀, 인수인계팀의 3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는 문화관광부와 문예진흥원, 문화예술계 인사가 참여하였다. 설립준비단 구성원은 사안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되었으며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위원은 외부위원 7명, 내부위원 7명으로 총 14명이었다. 기획총괄팀은 위원회 및 사무처 구성, 문예시설 개선방안, 추천위원 구성방안 등 위원회 대비 주요 정책사항을 논의하는 임무를 갖고 있었다. 규정제정·실무팀은 시행령안, 정관 등 제 규정(안) 작성, 기타 실무전반을 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수인계팀은 7월 초에 구성되어 재산 인수인계·등기 등 관련 실무를 수행하였다.

【 설립준비단 구성위원 】

- 외부위원(7명) : 김형수(민족작가회의 사무총장, 시인), 심재찬(기초예술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연극연출가협회장), 김종현(예총 사무총장), 안승원(한국무용협회 사무국장), 박신의(경희대 교수), 정광렬(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인배(문예진흥원 이사, 민예총 정책실장)
- 내부위원(7명) : 문화관광부(예술국장, 예술정책과장, 정책보좌관, 담당사무관, 문예진흥원(강형철 사무총장, 양효석 정책실장, 박두현 정책위원)

이렇게 구성된 설립준비단은 2005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10회에 걸친 준비단 내부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입법예고('05.3.19~4.8)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정부 내의 법령 제정절차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예술현장에서의 논의도 병행해서 진행되었다. 기초예술연대의 주관으로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 예술지원정책, 공연·독립예술, 시각예술, 문학, 음악·전통예술 등의 분야를 망라한 총 6차례의 범문화예술단체 연속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설립준비단에서는 여기에서의 논의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준비단 회의일정 및 주요 논의사항 】

- 1차 회의('05. 2. 3) : TF 운영계획 및 시행령 초안 검토
- 2차 회의('05. 2.15) : 위원추천위원회 구성방안 및 시행령안 검토
- 3차 회의('05. 2.19) : 평가제도 운영방안 및 기타 시행령안 검토
- 4차 회의('05. 3.10) : 문예시설 운영혁신 방안 검토
- 5차 회의('05. 3.16)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문화예술위원회 비전과 목표
- 6차 회의('05. 3.30)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7차 회의('05. 4.20) : 소위원회 운영방안, 지원시설 운영방안
- 8차 회의('05. 5. 3) :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평가 방안, 위원회 출범행사 추진방안
- 9차 회의('05. 5.10) : 문예진흥원 평가제도 운영현황 설명, 위원회 정관(안) 검토
- 10차 회의('05. 6.10) : 위원회 사무처 조직운영 전문화 방안, 위원회 목적 정관규정 검토, 위원회 출범행사 추진일정 검토

나. 아직도 남아 있는 쟁점 : 위원회, 누가? 어떻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위원회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고 설립준비단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쟁점은 크게 두가지 였다. 첫 번째는 위원회·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이었으며 두 번째는 성과평가제도 운영방안이였다. 이는 결국 문화예술위원회를 누가 이끌어 가게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외한 위원회와 성과평가제도 운영방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었다.

첫째, 위원회·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금 논란이 되었으며, 가장 핵심적인 논쟁거리라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미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통과되어 공포되기까지 2년 가까운 논의에서 위원회 전환의 핵심 사안으로 “누가 위원이 될 것이냐”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인 것은 사실이다. 이는 위원을 누가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점이 위원회의 독립적 지위와 위상에도 깊은 관련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 민주성, 전문성과 관련된 논의로 귀결되었다.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제23조의4에 문화관광부 장관의 위원 임명에 대한 견제장치로 위원추천위원회가 포함되었으며, 따라서 설립준비단에서는 시행령개정안 검토와 관련해서 위원추천위원회에서의 위원선임 절차와 방법에서 어떻게 민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먼저, 위원구성의 민주성, 즉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근본 취지가 ‘현장 문화예술인 중심’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위원추천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시행령 속에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추천위원회의 위원선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추천위원회에서는 위원 후보자를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였다. 결국 각 장르의 인사를 균형적으로 배치하되, 문화예술의 탈 장르 및 다양화 추세를 감안하여 문화복지, 예술경영 등 문화예술 기능을 고려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특정 문화예술단체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각 분야의 대표성만으로 안배하였을 때, “급변하는 문화정세의 변화에 상응하는 지원정책의 수립”이라는 위원회 전환의 기본목표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는 위원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논의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 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하였고, 장르별 전문가 뿐 만 아니라 문화일반, 지역문화 등의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 문화예술진흥법의 제23조13은 소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 위원회 전환 초기부터 예술계의 관심은 오히려 소위원회의 구성에 집중되었다. 그 이유는 11인의 위원이, 그것도 위원장만이 상임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명예직 비상임으로 되어 있는 문화예술위원회가 방대한 문예진흥사업을 직접 챙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따라서 실제로는 분야별 전문가가 포진한 소위원회가 정책 형성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다.

설립준비단에서의 소위원회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자문기구이나 아니면 해당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위원회를 견제하는 역할이나 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는 소위원회의 상대적 독립성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이냐에 대한 논란으로서 설립준비단에서는 법에서 위원회의 하위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보조기구이고, 보다 세분화된 전문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문기구, 그리고 보다 현장에 밀착된 예술인들로 위원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여론 수렴기구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장르별·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구체적인 장르와 기능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었다. 설립준비단은 장르에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을 포함시키고 기능별 소위원회는 지역문화, 예술교육, 남북교류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은 개정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상 시행령이 아니라 ‘위원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 결국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결론지어지게 된다.

둘째, 성과평가 방안에 대한 논의는 3개 분야로 나누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는 1) 시행령 개정시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평가방안과 관련된 조항을 검토하는 것과 2) 앞으로 문화예술위원회가 받게 될 문예진흥기금 운영에 대한 평가체계에 대한 것과 3)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될 각 단위사업의 평가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가방안과 관련된 논의에서 중요하게 검토된 것은 평가체제와 항목의 구성에서 문화예술위원회가 자체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와 기존 평가제도들 간에 어떤 차별성을 둘 것인가, 그리고 평가결과의 정책반영이나 심의반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였다.

설립준비단에서는 평가단 구성시 자격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는 기금 운용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평가범위와 방법과 관련해서는 기금 운용평가, 경영평가 등 기존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와 위원회 자체평가제도와 연계 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예술 분야의 성과는 계량적·결과적 지표에 의해서 정량적으로만 측정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이므로 정성적인 평가가 함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 긴 여정의 끝 : 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

설립준비단의 논의가 정리되고 반영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입법 절차도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005년 6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 6월 13일에 공포되게 된다.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은 위원추천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후보 추천, 성과평가 방법과 절차를 핵심내용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 개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주요 골자 】

□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 추천위원수 : 각 장르 및 분야별로 2~3명 내외를 배정할 수 있도록 20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
- 추천위원 자격요건
 1.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3.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 추천위원 구성 시 고려사항
 1.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및 전통예술의 분야별로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2인 이상,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등의 분야의 전문가가 5인 이상 포함될 것
 2. 어느 하나의 단체(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가 과반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추천위원회의 위원후보 추천

- 위원후보 추천시 고려사항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2.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등의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 남·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 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후보위원을 추천

□ 성과평가 방법 및 절차

- 평가계획의 수립
 - 문화부장관은 다음 년도의 기금지원의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평가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 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
 - 평가계획에는 평가목적 및 필요성, 평가의 대상 및 범위,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계획이 포함
- 평가단의 구성·운영
 - 기금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부 소속공무원,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

개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문화관광부는 2005년 6월 27일 총 21명으로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선임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위원선임은 후보자 공개모집(05. 6.29 ~ 7.13)을 통한 응모자 중에서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후보자 추천(05. 7.22)을 거쳐 2005년 8월 5일에 최종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 위촉됨으로서 이루어진다. 이후 2005년 8월 26일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11인의 현장예술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서 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함으로서 현장중심의 예술지원기구로 전환하기 위해 2003년 4월부터 시작된 2년 4개월의 대장정은 마무리된다.

2005년 9월 29일에 개최된 출범행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영상메세지를 통해 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은 우리의 문화예술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의 순간이며, 그동안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였던 문화예술인들이 정책의 입안자이자 수행자로 바뀐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영상메세지(발췌)】

지금 우리의 문화예술정책은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은 여러분들의 고민과 노고가 진정한 참여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없는 기쁨과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을 온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중략)

참여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주요사항 중 하나였던 문예진흥원의 위원회로의 전환은 이러한 예술현장의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0여년간 형성된 관습적인 문화행정체계를 변화시키는 일 뿐 만 아니라 급소한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실입니다.

위원회 제도의 특징은 민간이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공영역이 민간에게 참여하는 동시적 구조에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그동안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였던 문화예술인들이 정책의 입안자이자 수행자로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간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제기해온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진 현장 중심의 문예지원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이 문화예술계가 안고 있는 숱한 난제를 한꺼번에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혁신은 속성상 기존의 관행과 인습에 커다란 도전을 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변화에 대한 불안과 오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갖은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문화의 논밭을 일구어 온 것처럼 개방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하여 문화예술인들이 서로 대화하고 고민하며 그 땀을 나누어 흘린다면, 사소한 문제들은 도약의 새로운 힘으로 바뀌어 질 것입니다.(중략)

2. 자율과 참여가 구현되는 예술정책을 위하여

가. 새로이 생산되는 예술정책들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은 단순히 독임제에서 합의제로 바뀌었다는 것 뿐 만 아니라 그에 따라 예술현장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동시적 주체로 승격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한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위원회라는 제도나 조직체계의 변화와 더불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예술정책이 생산되고 실행되어야만 했다. 출범 이후 2년여의 기간 동안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현장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새로운 예술정책을 생산하려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주요사업과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인 위원회가 활발하게 가동되었다. 위원회 전환 이후 2년간 36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40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의결안건 외에도 토의 및 보고 안건의 처리를 통해 현장예술인들로 구성된 위원들의 의견이 토론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반영되는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문예진흥원 시절 단순 의결기구였던 이사회의 성격을 바뀌어나가는 데 주력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최현황 ('05. 9월 ~ '07. 8월 말) 】

개최 횟수	안건 총계	의결안건					토의·보고 안건
		원안의결	수정의결	유보	부결	소계	
36	304	52	21	3	-	75	228

위원회는 또한 각계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구성하고 운영을 활성화 하였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운영된 제1기 소위원회는 문학·시각예술·연극·음악·무용·전통예술·다원예술 등 장르별 소위원회(7개)와 국제 및 남북교류, 지역문화 등 기능별 소위원회(2개)를 구성하고 총 88명의 현장예술인이 참여하였다. 여기에서는 정기회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지원정책 개발 및 지원심의 방향 제안, 사업 집행에 관한 자문 등 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였다. 2007년 3월부터 운영된 제2기 소위원회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및 역할의 확대와 종합적인 예술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예술의사회적역할확대위원회, 기초예술의사회적가치확산위원회, 정책위원회 등 3개의 기능별 소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12개 위원회, 77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 소위원회 활동현황 ('05. 11월~' 07. 8월 말) 】

구 분	정기회의	정책포럼	자문회의 등	계
분야별 및 기능별 소위	128	8	5	141

둘째, 현장예술인 중심의 예술정책 지원기구로서의 임무와 비전,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핵심과제 등을 제시한 중단기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문화예술위원회는 발족 후 비전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여 약 6개월여에 걸쳐 예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의 논의를 거쳐 앞으로 5년 동안 실현해 나아가야 할 비전으로 '아르코 비전 2010'을 수립하고, 2006년 4월 5일에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임무를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으로 설정하고, '예술활동이 활기차게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사회(Creativity), 예술작품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성숙한 사회(Enrichment), 예술적 가치가 다양하게 피어나는 열린 사회(Diversity)'라는 예술위원회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전 실현을 위해 '활기찬 예술현장', '삶을 채우는 예술', '미래를 여는 예술'이라는 사업목표를 도출하고 다음과 같이 4대 목표, 12대 전략목표, 32대 핵심과제를 확정하였다.

【 전략목표 · 핵심과제 총괄표(아르코 비전 2010) 】

비전영역	전략목표	핵심과제
창의적인 사회 ↓ 활기찬 예술현장 'Creativity'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1. 창의적 예술 활동 증진 2. 예술가의 창작 역량강화 3. 전문예술단체 육성(다년간프로젝트)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4. 기초예술 창작 및 매개 공간 활성화 5. 예술시장 구조개선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6. 국제 예술교류 프로젝트 다각화 7. 국제 예술 교류기반의 선진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8.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 교류기반 구축 9.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경쟁력 강화 10.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활성화 11. 지역 문화예술역량 강화기반 구축
성숙한 사회 ↓ 삶을 채우는 예술 'Enrichment'	예술의 생활화	12. 어린이 청소년 예술참여·교육 강화 13. 기초예술과 함께하는 문화나누기 활성화 14. 풀뿌리(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 진작 15. 생활환경의 예술적 조성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16. 소외지역 예술순회사업 내실화 17.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술프로그램 확대 18. 소외지역·계층 공동체 문화 환경 조성
열린 사회 ↓ 미래를 여는 예술 'Diversity'	새로운 예술 세계의 개척	19. 새로운 예술 주체 발굴과 육성 20. 예술의 다양성 확보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전	21.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22.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23. 조사·연구 및 비평 활성화 24. 예술자원의 보전과 활용
소계(사업부문)		3대 목표, 8개 전략목표 24개 핵심과제
모두에게 신뢰받는 예술위원회 ↓ 신뢰경영	문화예술 지원체계 혁신	1. 지원구조 및 평가체계 혁신 2. 문화예술 지원기구 간 협력 강화
	문화예술시설 운영 혁신	3. 극장·미술관 책임경영제 도입 4. 연수원·자료관 기능 전문화
	문화예술 지원 서비스 경영체제 구축	5. 예술행정의 단계적 전문화(조직·인사) 6. 문화예술 종합 지원서비스센터 구축
	문화예술 재원개발	7. 민간기부금 확대 및 자체 수익사업 개발 8.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소계(경영부문)		1대 목표, 4개 전략목표, 8개 핵심과제
계		4대 목표, 12개 전략목표, 32개 핵심과제

아울러, 이러한 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과 목표, 핵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문화에

술위원회가 현장 중심의 예술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방향이자 사업추진에 있어 위원회가 갖는 각오이며 태도라고 볼 수 있다.

【 비전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아르코 비전 2010) 】

1. 예술가의 창작을 돕고 예술 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 그동안 예술지원이 작품 또는 작품 생산에 맞추어짐으로써 양적 팽창에 비한 질적 저하와 생산 과잉에 비한 향유 부재라는 왜곡을 초래했다면, 예술위원회는 예술가의 성장을 돕는 정책과 예술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관리하는 정책에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 예술작품과 그 향수를 통해 지역간 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 예술에서 발원된 문화적 가치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회는 정치적·경제적 이득이나 효율보다 인간을 중심에 놓는 정신적 태도와 공동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성립된다. 가족의 해체, 이주노동자 차별, 사상적 갈등, 빈부의 격차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제반 문제는 정치적·경제적 노력만으로는 완치할 수 없다. 그 실마리는 정신적 태도, 즉 감성적 토대의 기반 하에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예술위원회는 빈부간의 양극화, 지역간의 양극화가 불러온 문화향유의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3. 미래의 예술을 위해 다원적이고 실험적인 형식에 주목한다.
 - 전통과 품격을 지닌 기성 예술을 장려하고 사회적으로 재생산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나 한국 문화예술의 비전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장르 중심의 제도적이고 도식화된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예술의 다양성을 중시할 것이며, 예술의 다원적 영역과 실험예술을 배려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4. 기관의 독자적인 위상을 정립하고 이웃 문화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 예술위원회의 비전은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구호와 정책의 난발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정부의 타 부처 혹은 기관과의 협력과 정책 교류를 통해 진전되고 증폭된다. 특히 관민의 유사기관 혹은 지역기구 간에 예술지원정책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예술을 관리하는 최고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확보할 것이다.
5. 기관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현장성을 담보한다.
 - 예술위원회가 내실 없는 정책을 기획·집행한다면 그 결과는 예술 현장의 왜곡과 파괴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까닭에 소위원회를 통해 예술현장의 의견 수렴이 용이하도록 하고, 유효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심의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도 있었다. 예술위원회는 공공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지원심의제도를 개편하여 심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기금 심의에 대한 위원회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분야별 심의위원회는 상시 추천제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인사를 발굴하여 인력풀을 확충코자 하였다.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 제도를 신설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도화하였다.

【2007년도 분야별 심의위원회 구성 절차】

구 분	추진 내용	추진주체
1단계	○ 심의위원회 구성 원칙 확정	위원회
2단계	○ 심의위원 인력풀 구성 - 소위원회 참여, 상시 추천제 등 활용	사무처
3단계	○ 분야별 심의위원수의 3배수(안) 마련 - 지원신청 여부, 신청자와의 관련 여부, 심의위원 참여 실적 등 검토	사무처
4단계	○ 추천위원의 후보자 및 후보 순위(안) 조정	분야별 추천위원
5단계	○ 심의위원 후보(안) 확정(후보자 순위 포함) - 심의위원회 구성 원칙 고려 ○ 심의위원 후보(안) 위원회 상정	위원장
6단계	○ 심의위원 후보(안) 검토 및 조정 ○ 심의위원 확정(후보자 포함)	위원회
7단계	○ 심의위원 섭외	사무처
8단계	○ 심의위원 위촉	위원장

특히, 심의위원의 자기검증과 심의기피제를 도입하여 유관 사업에 대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에 관한 규정을 강화(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규정 06.7.21)하여 위원의 심의의결 시 관여금지 범위를 기존의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서 '현재 또는 직전에 임원으로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 개정하였다. 또한 위원의 기금 수혜 내역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넷째, 단년도·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였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예술창작 전문단체의 장기 집중육성 프로젝트'를 2006년 처음 추진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의의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예술전문단체를 집중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고 창작역량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며 현장 활동을 통해 창작역량이 검증된 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분야 예술전문단체를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단체로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의해 현재 연희단거리패(연극) 등 34개의 전문 예술단체를 매년 1억원 내외로 3년간 지원하였다.

다섯째, 예술위원회는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는 저소득층(장애인·아동 등)을 공연·전시 등에 초청하여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였다. 저소득층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술의 사회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기존의 사랑티켓제도, 문학나눔, 전시나눔 사업 외에 문화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총 248,677명의 특수 소외계층에 1인당 연 일정금액(3만원~5만원)의 문화예술 활동비를 보조하는 문화바우처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가 강조하는 문화의 민주화 정책에 따라 산간벽지, 농어촌, 도서지역 등 문화예술 접촉 기회가 어려운 소외지역에 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우수문화예술순회사업'을 확대 전개하였다. 2006년 한 해에는 총 215개 단체가 1,721개 지역을 순회하였다. 2007년에는 아직 사업성과가 최종적으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총 263개 단체가 순회사업에 참여하는 등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밖에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차세대 신진예술가 육성 지원 정책들이 신설되면서 시대적 높이와 예술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책들을 늘려가고 있다.

나. 남아 있는 과제들

문화예술위원회는 다양한 찬반 논의 속에서 2년여의 의견 수렴과 조정과정을 거쳐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지원정책기구로 탄생하였다. 그러나 민간 주도의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정책 주체들과의 명확한 역할관계를 정립하는 것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문화예술지원형태의 국가별 분류방식에 의하면, 문예진흥원 시기의 우리나라 문화예술지원 체계는 프랑스 형태와 같았다. 즉,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적 시스템인 '중앙부처' 또는 '독립부처'형 모델로 분류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위원회 출범은 문화예술 지원체계가 프랑스 형태의 "독립부처" 모형에서 영국·캐나다 형태의 "부처관할 위원회" 모형으로 바뀌었음을 뜻하며, 이에 따라 정부와의 관계도 정책결정과 행정적 대행기구라는 상하 관계에서 문화예술위원회가 독자적인 예술정책과 전략체계를 갖고 정부와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적 거버넌스 체계로 진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문화 거버넌스 체계로서 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정부(문화부, 지자체)와 위원회 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으로 지역문화예술 지원행정이 전문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의 공유나 지원프로그램의 역할분담 등 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예술위원회(또는 지역문화재단)와의 협력관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수도에 거점을 둔 서울문화재단과의 지원영역 중복의 문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예술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도 중앙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두어 상호 연계운영(Matching System)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정부(문화부, 지자체)와 문화예술위원회(지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와의 협력 및 역할분담을 위한 방안을 보면, 정부는 국가차원의 예술 인프라 조성 및 제도 개선, 평가 등을 행하고,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 현장의 창작활동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위원회 간의 역할분담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사업유형, 지원대상, 지원방식, 성과평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부와 위원회의 역할 분담방안 】

구분	정 부 (문화부, 지자체)	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사업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지원 사업 ② 국가·지자체 문화행사 주최사업 ③ 대규모 문화시설 투자 등 인프라 구축사업 ④ 문화예술 여건조성을 위한 정책적·시의적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등 민간부문의 예술창작 연구 보급 활동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 ② 민간에서 추진할 수 없는 자체 공익성 기획사업 등 장기적·간접적 지원사업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도립(시립) 문화예술기관 및 책임 운영기관 ② 특수법인 형식의 문화예술기관 및 문화부·지자체 소속 문화예술기관 ③ 민법상 법인형식의 산하단체 및 정부·지자체 재정지원 하의 문화예술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간비영리 문화예술기관 ② 민간부문의 일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 방식	예술창작·향수를 위한 제도적 물적 토대를 마련하거나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책적 판단과 적시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로부터 공개 지원 신청을 받아 공적심의시스템 운영 ②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발굴지원, 기획지원제 운영
성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별지원사업 보다는 성과지표 개발에 의한 상위의 지원목표 달성 여부 ② 거시적 측면에서 평가를 통해 위원회·재단의 정책 및 사업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원된 예술가 및 단체의 사업성과 ② 비전 및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③ 자체평가 및 문화관광부·지자체 평가결과의 차년도 피드백

다음으로, 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예술위원회(또는 지역재단법인) 간의역할 분담방법을 예를 들면 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적인 예술창작역량 제고, 신진예술가 발굴, 전국규모의 문화프로젝트, 지역 간 순회사업 및 국제교류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예술단체활동과 지역축제 등을 지원하며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사업일 경우, 중앙과 지방위원회가 상호 협의, 협력하여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과 지역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고 각 지방위원회 간 지원의 형평성, 지원정책의 조율 등을 위해 상호간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협의체에서는 ①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및 공동 협력방안

강구 ②지원기구 간 협력, 교류, 역할 분담 등 지원정책의 효과성 및 일관성 제고
③기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제반 사항 협의 및 정책 건의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중앙과 지방위원회의 역할분담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울러 문화예술지원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와 산업예술을 전담하는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다른 문화관련 진흥기구와의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부문과의 공동지원 프로젝트를 활성화 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각 기구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가의 지원정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 혹은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계의 자율정책기구로서 정부(지자체)로부터 부여받은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술정책에 대한 조사·연구·평가 기능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즉, 예술현장의 정확한 파악과 즉각적인 지원정책의 적용 등 위원회(문화재단)가 차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특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문화예술위원회(문화재단)가 기초예술의 진원지로서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어야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고 한국형 지원정책 모델로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여건이 갖춰졌더라도 재원이 없으면 총알 없는 총을 들고 전장에 선 꼴이 된다. 정책 실현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문화예술 재원의 영세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에 설치근거를 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동법 제18조에 의거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기타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영화관 등 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지던 모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 1월부터 폐지되었다. 현재 문예진흥기금은 이자율 하락으로 기금의 이자만으로는 문예진흥사업을 꾸려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특히 지난 30여년 간 문화예술계의 젖줄 역할을 해온 문예진흥기금의 폐지로 연간 500억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대체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 문예진흥기금 증장기 재정전망 】

(단위 :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순수입(A)	85,089	93,052	98,759	101,605	106,188
순지출(B)	116,220	140,110	149,993	159,174	169,897
수지차(A-B)	△31,131	△47,058	△51,234	△57,569	△63,709
조성잔액	423,656	376,598	325,364	267,795	204,086

현재 2004년 4월1일부터 발효된 『복권및복권기금관리법』에 따라 복권기금(로또복권)의 수익금 중 일부가 문화예술 분야로 유입되어 대체재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복권기금은 문화예술의 유일하고 항구적인 재원이 되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화예술분야의 공공 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재원은 영·미 사례와 같이 일차적으로 국가재정이나 지자체의 예산에서 출연되어야 한다. 일례로 영국 예술위원회는 연간 1조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중 50%는 국고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복권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신규재원의 확보 방안으로 '경륜·경정 수익금의 분배', '민간 기부금의 활성화', '문화시설 입장료 수익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활용', '기업메세나를 통한 간접지원 확대', '골프연습장 등 수익사업의 추진', '타 기금의 문화사업 활용' 등이 검토된 바 있다. 특히 열악한 문화예술 기부시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의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민과 기업의 문화예술 기부 확산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기부문화 확산을 체계적으로 펴기 위한 전담기구 구성, 기부확산 캠페인활동, 기부모금 협력체계 구축, 기부 관련 세제 개선 등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5 장 예술, 세상의 변두리에서 심장부로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문화적 관점의 결여가 분단 극복을 비롯하여 국가적 운명과 장래를 결정짓는 모든 과제들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삶의 환희와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형성된다. 전쟁이 나면 누군가는 파괴비용과 건설비용을 벌게 되지만 누군가는 삶의 중요한 실체들을 잃게 된다. 그 실체 하나 하나를 이루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 인류로 하여금 삶의 질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삶의 질'은 근본적으로 예술에 의해서 지켜져 왔고, 예술과 함께 성장했으며, 예술에 의탁하여 훈련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에서 예술이 위축되면서 남긴 후유증이 있다면 그것은 '추상적 가치의 붕괴'일 것이다. 추상적 가치가 붕괴된다는 것은 낱알의 개인들이 하나로 묶여서 감당해야 하는, 공동의 운명을 지탱하는 꿈이 붕괴됨을 의미한다. 공동의 가치 지평을 잃은 사회는 그 속의 개인들이 꿈과 이상이 담긴 생애를 살려고 할 때,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외려 궁핍해지는 야만을 경험하게 만든다.

오늘날 한국에서 사람들은 부의 습득만이 삶의 목적인 듯이 살고 있지만, 부가 저절로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부는 또 다른 부의 증식을 위해서만 사용되거나, 하급의 욕망을 해소하는 소비기회로만 작동되어져서는 안된다.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한 토대를 확보했을 때에야 비로소 소비로부터의 소외가 삶의 소외로 이어져버리는 몰가치한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예술은 사회가 갈 곳을 예비한다.

예술은 분명히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의존할 수 있는 개인 자산이나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도구이다. 예술은 삶을 이해시키고, 세상살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방법을 제공한다. 그리고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것이고, 범죄와 폭력의 질서에서 가장 멀리 벗어나는 길이다.

또한 예술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의 전망에 개입한다.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이다. 우리의 내면세계, 즉 출생, 삶, 사랑, 죽음, 고통, 기쁨, 비참함, 공포, 안도, 성공과 실패의 세계 또한 나름의 발명자와 개척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이다. 위대한 예술의 힘을 경험한 이들은 비록 이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감 외에 또 하나의 육감을 얻는다.

까닭에 많은 실업자들 속에서도 예술을 이야기해야 하고, 거리에서 굶주리는 부랑아들을 보면서도 예술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방황하는, 불이익당하는, 버려져 있는 모든 약자들 속에서도 예술을 이야기해야 한다. 부유한 이들만이 예술을 향유하는 것만큼 심각한 양극화가 어디 있는가. 예술 활동이 한없는 소비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단순히 대중이 일하고 세금을 내고 난 후에 하는 기분전환이나 즐거움을 얻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시장경제는 예술이 스스로의 힘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린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찾고, 독서와 음악과 무용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창의적 사유를 훈련하며, 그것을 또 다른 재부의 생산에 이용하지만, 누구도 사후에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아니, 예술이 사회에 안긴 창의적 사유의 제공자를 누구도 구별해낼 수 없다.

따라서 문화예술에 관한 행정체계는 다양한 환경변화를 반영하며 진화해야 한다.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문화예술계에서는 독임제 형태의 문예진흥원을 현장 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위원회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술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며, 보다 합리적인 문화예술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적 의사결정기구로의 전환이 필연적이기 때문이었다.

참여정부는 요원하게만 보였던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문화관광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아래 수차례의 공청회, 토론회, 면담 등을 통해 예술인들의 의견을 결집하였고, 반대의견을 제시하

는 세력들을 설득해 나갔다. 그 결과 2005년 자율·참여·분권의 3대 가치를 문화예술 현장에 확산시키고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하게 문화예술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민간 자율적 의사 결정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었고 문화예술행정 지원의 패러다임이 확립되었다. 이로써 문화행정의 거버넌스 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개혁이 만일 절차나 제도의 손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을 포함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사건이기보다 창조성과 지속성이 살아 있는 문화적 과정이어야 한다. 통치의 문화적 차원이 배제되어버린 건조한 정치적 계몽주의는 국민대중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문화와 문화의 근간인 예술을 백안시할 수 없는 이유, 참여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에 예술인들이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부록 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일지

- 대통령선거공약 “순수문화예술진흥기구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현장 문화예술인 중심의 지원 기구로 전환” (’ 02.11)

-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 보고서 기본방향 확정(’ 03.4.8)
 - 문예진흥원을 현장 문화예술인 중심의 지원기구로 전환
 - 참여정부와 『자율·분권·참여』 3대 가치를 문화예술계에 정착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위원회 전환 추진을 위한 문화행정혁신위원회(민간자율 TF) 설치 (’ 03.4.14)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환을 위한 문화관광부, 문예진흥원 직원 대상 의견 수렴(’ 03.7)

- 문화행정혁신위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초안 마련(’ 03.7)
 - 혁신위 간담회, 토론회 등 12회 개최
 - 개정안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이사회 검토 및 자문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문화예술계 의견 수렴(’ 03.7.25, 프레스센터)
 - 예총, 민예총, 문화연대, 전국문화원연합회 등 대상

- 연극계 간담회 개최
 - 연극인 20명(’ 03.8.28, 차관)
 - 연극인 10명 (’ 03.9.20, 장관)
 - 학계 4명 (’ 03.9.26, 차관)
 - 극단대표 18명 (’ 03.10.21, 예술진흥과장, 공연예술과장)

- 예총회장, 10개 회원단체장 장관 간담회(’ 03.9.23, 한국의 집)

- 문화예술분야 각 장르별 간담회 개최

- 문학계 인사 17명(' 03.10.1, 예술국장)
- 미술계 인사 12명(' 03. 10.2, 예술국장)
- 음악·무용계 인사 10명(' 03.10.7, 예술국장)

- 예총, 10개 회원단체별 추천 인사(25명) 대상 설명회(' 03.10.13, 세종홀)

- 대학로포럼 참석, 법 개정 취지 등 설명(' 03.10.13, 세종홀)

- ‘진정한 문화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연극과 교수연대’ 44명,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문화예술위원회 조속 설립’ 촉구 건의문 전달(' 03.10.14)

- 문예진흥원 주관 심포지엄 “문예진흥원의 위원회 전환과 예술진흥정책의 발전 방향” (' 03.10.22, 마로니에미술관 세미나실)

- 국회 주관(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회장 김덕룡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관련 토론회 참석 설명(' 03.10.24, 예술진흥과장)

- 한국연극협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환 지지 성명서 발표(' 03.11.6)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3.11.11)

-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전국예술인 연대”
 -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범 예술인 3000인 성명 발표(' 03.11.15)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03.11.17)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부일 : ' 03.11.18

-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지지하는 “범 예술인 공동 기자회견”
 - 예총, 민예총, 대학로포럼 등 29개 문화예술단체(' 03.11.25)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03.12.16)

- 미술인회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에 대한 미술인 토론회 개최
 - “문화예술위원회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04.2.5, 마로니에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범문화예술계 기자회견 (' 04.2.27)
 - 예총, 민예총 등 40개 문화예술단체 및 3천5백여명 지지 성명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개최
 - 제1차 회의 개최(' 04.2.19) : 보류
 - 제2차 회의 개최(' 04.2.23) : 공청회(문화예술인 의견 수렴), 보류
 - 제3차 회의 개최(' 04.3.9)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수정 의결

-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제17대 국회 재입법 추진 결정(' 04.4월)

-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생략회의/제16회 국회상정 법안과 동일(' 04.4월)

-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규제심사 완료(' 04.5.10)

-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법제처 제출(' 04.5.12)

-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차관회의 상정(' 04.5.25)

-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상정(' 04.5.25)

- 제16대 국회 폐회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자동 폐기(' 04.5.29)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제17대 국회 제출(' 04.6.3) : 재상정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정(' 04.9.13)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 04.9.15) : 문화예술계 인사 간담회 개최키로 합의
- 법안심사소위 위원 : 이상호(위원장), 김재홍, 이경숙(이상 열린우리당), 박형준, 정종복(이상 한나라당), 천영세(민주노동당)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 개최 (' 04.11.17) : 문화예술계 인사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참석자 : 이성림 예총회장, 김용태 민예총부회장, 오세곤 기초예술연대연구위원장, 강형철 문예진흥원 사무총장(위옥환 예술국장 배석)
 - 안건 :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구성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문화관광부 장관 단독 위촉 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한 장관 위촉 건 논의)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3차 회의 개최 (' 04.11.29)
- 위원 선임방안 및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 및 법안심사소위의 수정안 제시
 - 강형철 문예진흥원 사무총장, 문화관광부 예술국장 배석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결(' 04.12.7)
-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시한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04.12.23)
- 문화관광위원회가 의결한 대안을 법 조문 및 자구 수정을 거쳐 의결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04.12.29)
- 문화관광위원회가 제출한 대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한 내용을 의결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안 정부이송(' 05.1.14)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05.1.18)
- 민예총,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의 원칙과 방향” 포럼 개최(' 05.1.26)
- 구 국립중앙박물관(경복궁 내) 강당, 14:00 ~ 18:00

- 사회 : 박인배(민예총 기획실장, 문예진흥원 이사)
- 발제 : 이용배(계원조형예술대 교수,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1기)
정광렬(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위원)
- 토론 : 김갑수(문화부 예술정책과장), 양효석(문예진흥원 정책실장)
채승훈(서울연극협회장, 연극연출), 박신의(경희대 교수, 미술평론)

○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공포(' 05.1.27) : 법률제7364호

-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5907호(' 05.1.27/목) 게시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05.3.18 공고)

- 입법예고 기간 : 2005.3.19 ~ 4.8(20일간)

○ 문예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방향과 과제” 문화예술정책포럼 개최(' 05.3.18)

- 일시/장소 : 2005.3.18(금) 14:00 ~ 17:30/마로니에미술관 3층 세미나실
- 주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방향과 과제
- 사회 : 양효석(문예진흥원 정책실장)
- 발제 : 방현석(소설가, 중앙대 교수, 기초예술연대정책위원장)
김갑수(문화관광부 예술정책과장)
김영수(연극연출가, 극단신화대표)
- 토론 : 김덕수(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김복희(한국무용협회 이사장, 한양대 교수)
임정희(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소장, 연세대 겸임교수)
최준호(예술의전당 공연예술감독)
박인배(연극연출가, 민예총 기획실장)
김세준(숙명여대 문화관광학과 교수)
홍승찬(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 기초예술연대, 문화예술위원회 전환 범 문화예술단체 연속토론회 개최

- 제1차 토론회 : 예술지원정책 부문
- 주제 : 문화예술진흥정책 재정립 및 지원구조의 변화방향
- 일시/장소 : 2005.4.15(금), 14:00 ~ 18:00, 마로니에미술관 3층 세미나실

- 제2차 토론회 : 공연·독립예술 부문
 - 주제 : 공연예술의 비전, 해법을 찾는다
 - 일시/장소 : 2005.5.6(금), 14:00 ~ 18:00, 마로니에미술관 3층 세미나실
- 제3차 토론회 : 시각예술 부문
 - 주제 : 시각예술 분야 지원정책의 새로운 국면을 기대하여
 - 일시/장소 : 2005.5.13(금), 14:00 ~ 18:00, 마로니에미술관 3층 세미나실
- 제4차 토론회 : 문학 부문
 - 주제 : 문화예술위원회의 과제와 문학 지원정책의 방향
 - 일시/장소 : 2005.5.20(금), 14:00 ~ 18:00, 마로니에미술관 3층 세미나실
- 제5차 토론회 : 음악·전통예술 부문
 - 주제 : 문화예술위원회의 과제와 음악·전통예술 지원정책의 방향
 - 일시/장소 : 2005.6.2(목), 14:00 ~ 18:00, 마로니에미술관 3층 세미나실
- 제6차 토론회 : 종합 토론
 - 주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방향 모색을 위한 범 문화예술인 대토론회
 - 일시/장소 : 2005.6.13(월), 14:00 ~ 18:00,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5.6.7)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 05.6.13 공포)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18861호

○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준비단(TF) 구성·운영(' 05.2.3 ~ 6월)

※ 설립준비단 구성 : 14인

- 외부위원 : 김형수(작가회의 사무총장), 심재찬(기초예술연대집행위원장), 김종헌(예총 사무총장), 안승원(한국무용협회 사무국장), 박신의(경희대 교수), 정광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인배(민예총 기획실장, 문예진흥원 이사)
- 내부위원
 - 문화관광부 : 위옥환 예술국장, 김갑수 예술정책과장, 이교택 사무관
 - 문예진흥원 : 강형철 사무총장, 양효석 정책실장, 박두현 정책위원

- 1차 회의 개최(' 05.2.3) : TF 운영계획 및 시행령 초안 검토
- 2차 회의 개최(' 05.2.15) :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방안 시행령안 검토
- 3차 회의 개최(' 05.2.19) : 평가제도운영방안 및 기타 시행령안 검토
- 4차 회의 개최(' 05.3.10) : 문예시설 운영 혁신 방안 검토
- 5차 회의 개최(' 05.3.16)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과 목표
- 6차 회의 개최(' 05.3.30)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7차 회의 개최(' 05.4.20) : 소위원회 운영방안
지원시설 운영방안
- 8차 회의 개최(' 05.5.3) :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평가방안,
위원회 출범행사 추진방안
- 9차 회의 개최(' 05.5.10) : 문예진흥원 평가제도 운영 현황 설명
위원회 정관(안) 검토
- 10차 회의 개최(' 05.6.10) : 위원회 사무처 조직운영 전문화 방안
위원회 목적 정관 규정 검토
위원회 출범행사 추진일정 검토

-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05.6.27)
- 문화예술위원회 위원후보자 공개모집(' 05.6.29 ~ 7.13)
-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후보자 추천(' 05.7.22)
-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시행(' 05.7.28)
-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시행(' 05.7.28)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05.8.26)

【 부록 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소위원 명단

[위원 구성 : 11인 / 임기 : 3년(위원장 2007.9.7~2010.9.6,
위원 2005.8.26 ~ 2008.8.25)]

분야	성명	성별	생년	주요경력	상임 / 비상임
문학	김병익	남	1938	문학평론가,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65-75), 한국기자협회 제12, 13대 회장(74-75), (주)문학과지성사 대표이사(75-00), 인하대학교 국문학과 초빙교수(01-05), (주)문학과지성사 상임고문(00-현재), 토지문화재단 이사(96-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05-07)	위원장 상임 (*05.8.26~ '07.7.26)
미술	김정현	남	1946	화가, (사)민족미술인협회 대표 및 이사(89-03)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 및 지도위원 문화연대 공동대표 및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80-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07.9.7-현재)	위원장 상임 (*07.9.7~ '10.9.6) 비상임 (*05.8.26~ '07.9.6)
음악	정완규	남	1957	음악평론가, 한국음악협회 부이사장(05-07),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회장(98-06),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명예회장(현재), 한국피아노학회 연구이사(03-현재),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실행위원(05-현재),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학과 교수(현재)	비상임
연극	심재찬	남	1953	연출가, (사)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98-00), 한국연극연출가협회 회장(03-06), 한일연극교류협의회 회장 (04-06), 기초예술연대 공동상임집행위원장(04-06),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04-05), 연극인복지재단 부이사장(05-현재), 극단 전망 대표(90-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05-현재)	사무처장 비상임 (*05.8.26~ '07.11.18)

분야	성명	성별	생년	주요경력	상임 / 비상임
무용	김현자	여	1947	현대무용가, 국립무용단 예술감독(03-05), 김현자 춤아카데미 대표(88-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교수(97-현재)	비상임
전통 예술	한명희	남	1939	동양방송 PD(66-75), 국립국악원 원장(97-98), 서울 시립대 음악과 교수(85-04),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06-현재), 이미지 문화서원 좌장(현재), (사)한국민족 음악가연합 이사장(97-현재), 한국중앙아시아문화 예술교류회 회장(91-현재)	비상임
문화 일반	강준혁	남	1948	문화기획자, 춘천인형극제 등 문화행사 기획 다수, 경기문화재단 세계평화축전 총감독(04-05), (재)춘천인형극제 이사장(89-현재),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원장(04-현재), (사)다음문화예술기획 연구회 다음연구아카데미 원장(현재),	비상임
	김언호	남	1945	동아일보사 기자(68-75), 한국출판인회의 회장(98-02), 헤이리 예술마을 이사장(97-06), 파주 출판도시 이사(91-현재), 대한출판문화협회 수석 부회장(05-현재), 한길사 대표(76-현재)	비상임
문화 일반	박신의	여	1957	미술평론가, 미술사가,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04-06),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04-06), 경희대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01-현재)	비상임
	박종관	남	1959	극단상당극회·극단놀이패열림터 대표 역임, 충북 문화운동연합 의장(93-94), (사)충북민예총 사무처장(94-00, 03-05),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부이사장(05-06), (사)충북민예총 부지회장(06-현재)	비상임
	전효관	남	1964	서울시립하자센터 부소장(99-03),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전문위원(04-05),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04-05),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소장(04-현재),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현재)	비상임

○ 소위원회 위원 구성

- 제1기 : 9개위원회 88명, 임기 1년(2005.11.1 ~ 2006.10.31)

1. 문학위원회 (10명)

성명	성별	생년	현직/경력	세부분야	비고
이시영	남	1950	시인 전 창작과비평사 대표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이사장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시	위원장
김병익	남	1938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평론가, 인하대 초빙교수 전 문학과지성사 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평론	
김정환	남	1963	시인 한국문학예술학교 교장	시	
최영철	남	1958	시인 게릴라 편집주간 문학과경계 편집위원	시	
나희덕	여	1966	시인 조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시	
은희경	여	1959	소설가	소설	
성석제	남	1961	소설가	소설	
강영숙	여	1967	소설가	소설	
서영채	남	1961	문학동네 편집위원 한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평론	
김이구	남	1959	아동문학평론가, 소설가 창비어린이 편집인	아동문학	

2. 시각예술위원회 (10명)

성명	성별	생년	현직/경력	세부분야	비고
김정현	남	1946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회화	위원장
강태희	여	1947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현) 전 서양미술사학회 회장 (1995~1996)	이론·평론	
안상수	남	1952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현) 프랑스 쇼몽 포스터페스티벌 입상(1997)	시각 디자인	
이종빈	남	1954	경희대 미술대학 교수(현) 전 한국미술협회 상근부이사장 (1998~2001) * 올해의예술상 자문위원('05)	조각·설치	
이지호	여	1959	대전시립미술관장(현) 전 신미술관(충북 청주) 학예실장	이론·평론	
이영준	남	1961	계원조형예술대 교수(현) 전 월간미술 기자 * 사진대전 평가위원('05), 새예술정책 기획위원('04)	사진	'05.11.1~'06.4.20
이경민	남	1967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진 강사(현) (도서출판)아카이브북스 기획위원(현) 한국사진사연구소 연구원 계간지 <사진비평> 편집위원	사진	'06.4.21~10.31
공성훈	남	1965	성균관대 예술학부 교수(현)	영상·설치	
안인기	남	1967	평론가 전 월간미술 기자, 월간아트 편집위원 전 영은미술관 학예팀장 * 지원사업평가위원('05), 올해의예술상 예·본심위원('05)	이론·평론	
양지연	여	1969	동덕여대 큐레이터전공 교수(현) * 새예술정책 기획위원('04), 마로니에미술관 관객조사('04)	예술경영	
백기영	남	1969	경기문화재단 교육기획팀 전문위원(현) 전 미술인회의 사무국장	영상·설치, 예술정책	

3. 연극위원회 (8명)

성명	성별	생년	현직/경력	세부분야	비고
이강백	남	1947	현직 - 극작가, 서울예대 극작과 교수 경력 - 197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다섯>이 당선, 한국연극협회 이사, 국립극단 자문위원, 동아연극상 심사위원 등 수상 - 한국희곡문학상, 서울극평가그룹상, 베네주엘라 제3세계 희곡 특별상, 대한민국문학상, 동아연극상, 백상예술대상 희곡상, 대산문학상, 서울연극제 희곡상 등	극작	위원장
심재찬	남	1953	현직 - 극단전망 대표 경력 , 한국연극연출가협회 회장, 기초예술연대 공동상임집행위원장, 한일연극교류협의회 회장,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연출	
이상우	남	1951	현직 - 연출가 경력 - 극단 연우무대(단원, 상임연출가), 극단 차이무 창단(상임연출가, 대표 역임), 수상 - 동아연극상 연출상, 백상예술상 연출상, 제1회 뮤지컬 대상 등	연출	
이승엽	남	1961	현직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경력 - 전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장 '예술경영과 공연제작' 저술	기획	
임진택	남	1950	현직 - 연출가, 기획가, 극단 길라잡이 상임연출 겸 감독 경력 - 민예총 대변인, 사무처장, 사무총장, 전국민족극협의회 의장, 전주세계소리축제 총감독,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 집행위원장, 세계통과의레페스티벌 집행위원장	연출 기획	
이종국	남	1949	현직 - 배우, 극단 앙상블 대표, 극단 연합새천년 대표, 전국연극협회 회장 경력 - '인류최초의 키스' 등 연극 다수출연, 2005년 전국연극제 심사위원 역임 수상 - 대전광역시 문화상, 전국연극제 최우수 연기상 3회 수상, 자랑스러운 대전인상 수상 등	배우	
김명화	여	1966	현직 - 희곡작가, 평론가 경력 - 91년 한국연극 연극 평론 추천, 94년 예음상 연극 평론 당선, 수상 - 김상열 연극상, 올해의 좋은 연극 베스트 5 선정, 한국연극평론가협회 베스트 3 선정, 동아연극상 작품상, 대산문학상 희곡 부문 수상 등	극작, 평론	
박종관	남	195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극단 놀이패 열림터(상임연출, 대표역임) 한국민족극운동협회 부이사장 과천마당극제 사무국장, 극단 상당극회 대표역임	연출	

4. 무용위원회 (10명)

성명	성별	생년	현직/경력	세부분야	비고
김현자	여	1947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총괄	위원장
정은혜	여	1958	충남대 무용학과 교수 대전 춤목련회 예술감독·회장	한국춤	
손인영	여	1962	나우무용단 대표 전 서울예술단 예술감독	한국춤	
박명숙	여	1950	경희대 교수 서울현대무용단 예술감독	현대춤	
정의숙	여	1952	성균관대 무용학과 교수 아지드무용단 예술감독	현대춤	
김민희	여	1948	한양대 생활무용예술학과 교수 한국발레협회 회장 예술의전당 이사	발레	
김궁수	남	1958	중앙대 무용학과 교수 전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	발레	
김말복	여	1957	이화여대 무용학과 교수 한국무용예술학회 회장 ITI한국본부 회장	이론 /평론	
성기숙	여	1966	무용평론가 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 한국근대춤연구회 대표 성대, 전통예술원 등 출강	이론 /평론	
이종호	남	1953	무용평론가 연합통신 문화부장 유네스코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대표	대외/ 국제/ 홍보	

5. 음악위원회 (10명)

성명	성별	생년	현직/경력	세부분야	비 고
정완규	남	1957	중앙대 음대 피아노학과 교수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회장	피아노	위원장
백영은	여	1957	단국대 음악학부 작곡전공 교수 제19회 대한민국작곡상 수상	작곡/ 이론	
함일규	남	1956	중앙대 음대 관현악과 교수	관악	
이혜전	여	1961	숙명여대 음대 기악과 교수 (피아노)	피아노	
이나리메	여	1968	전 한양대 강사, 계원예고 강사 한국민족음악학회 회원	음악학	
윤경화	여	1971	연세대 강사, 계원예고 강사 카로스타악기양상블 악장	타악	
유영재	남	1958	한세대 음악학부 교수 경희대 오케스트라 지휘자	지휘	
이석렬	남	1962	평론가 예종 강사 올해의 예술상 예심위원	평론	
박정원	여	1957	한양대 음대 성악과 교수	성악/ 오페라	
윤승현	남	1966	한국작곡가협회이사, ISCN이사, 한국전자음악협회이사 추계예대 출강	작곡/ 이론	

6. 전통예술위원회 (12명)

성명	성별	생년	현직/경력	세부분야	비고
한명희	남	193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전 국립국악원장 전 서울시립대 음악과 교수	총괄	위원장
원일	남	1967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슬기둥, 푸리 활동	작곡	
김덕수	남	1952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한울림예술단 예술감독 열린우리당 문화예술위원회 자문위원	사물놀이	
송혜진	여	1960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 전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이론	
현경채	여	1960	국악평론가, 국악방송 해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강사	평론	
지애리	여	1965	가야금 연주자, 서울대 강사	가야금	
노재명	남	1969	국악음반박물관장 음반연구가, 명인기획 대표	평론	
김승근	남	1967	서울대 교수	작곡	
양성옥	여	1954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전 서울예술단 무용감독 태평무 전수조교	전통 무용	
진옥섭	남	1965	무용평론가 기획가·연출가	이론 (무용)	
박영규	남	1947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장 용인대 디자인학부 교수	공예	
장경희	여	1960	한서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문화재 전문위원	공예	

7. 다원예술위원회 (7명)

성명	성별	생년	현직/경력	세부분야	비고
전효관	남	1964	전남대 교수 전 하자센터 부소장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총괄	위원장
이원재	남	1972	문화연대 사무처장	예술정책	
김소연	여	1968	연극평론가 월간 민족예술 편집위원 민예총 킷쳐뉴스 편집위원	비주류 문화	
이규석	남	1971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과천한마당축제 운영위원	축제/행사	
박준흠	남	1966	광명음악밸리축제 예술감독, 대중음악/문화 비평웹진 가슴 편집장	음악	
김준기	남	1968	전시기획자 전 사비나미술관 학예실장	미술	
원영오	남	1970	극단 노뜰 대표 후용공연예술센터 예술감독	지역/ 소수자	

8. 남북 및 국제문화교류위원회 (10명)

성명	성별	생년	현직/경력	세부분야	비고
박신의	여	1957	미술평론가 경희대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총괄	위원장
김형수	남	1959	소설가, 평론가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 중앙대 예술대학원 객원교수 민예총 상임이사	문학 및 남북교류	
김성원	여	1961	전 동덕여대 겸임교수 독립 큐레이터	시각예술	
최준호	남	1959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예술의 전당 공연예술감독	연극	
김채현	남	1954	무용평론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무용	
양성원	남	1967	연세대 음대 교수, 첼리스트	음악	
주재연	남	1965	난장컬처스 대표 부여사물놀이 대축제 사무국장	전통	
김세준	남	1965	숙명여대 문화관광학과 교수 전 조지아주 사반나미술디자인대학 갤러리 학예연구실장 전 호암미술관 전임연구원 (현대조각)	문화정책 기관교류	
허 권	남	1955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	국제기구 문화교류	
박인배	남	1953	연출가, 극단 현장 대표 민예총 상임이사 한국민족극운동협회 부이사장	남북교류	

9. 지역문화위원회 (11명)

성명	성별	생년	현직/경력	세부분야	비고
박종관	남	195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국고지원사업 평가위원 충북문예진흥기금심의위원 경기문화재단 자문위원 역임 충북문화운동연합 의장 역임	지역문화	위원장
이종인	남	1934	한국문화행정연구소 소장 지역문화네트워크 고문	문화행정	
김기봉	남	1960	지역문화네트워크 상임대표 지역문화진흥법제정 추진위원장 민예총 지역문화예술위원장	지역문화	
이춘아	여	1956	대전 유성문화원 사무국장 충남대 여성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예술교육	
전고필	남	1968	광주 북구문화의집 상임위원 광주전남 문화연대 운영위원 한국문화의집협회 상임이사 동강대 관광정보과 겸임교수	지역문화	
서영수	남	1966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사)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 문화자원봉사 네트워크 운영위원 부산민예총 이사, 전 사무국장	축제기획	
양미경	여	1966	제주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문위원 전 세종갤러리 대표	시각예술	
함한희	여	1953	전북대 인문학부 교수 (고고문화인류학과)	문화이론	
박승희	남	1966	경주 위덕대 문화콘텐츠학부 교수 대구문화산업진흥위원회 문화산업포럼위 원	문화이론	
지금중	남	1963	문화연대 사무총장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문화정책	
나호열	남	1954	경희대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예총 정책연구위원	문학예술	

- 제2기 : 12개 위원회 77명, 임기 1년(2007.3.1 ~ 2008.2.29)

1. 문학위원회 (6명)

성명	생년	성별	현직	주요 경력	비고
이시영	1949	남	시인 단국대학교 문예창작 과 초빙교수	창작과비평사 편집장, 주간, 부사장	위원장 시
김병익	1938	남	문학 평론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장	문학과지성사 대표이사	평론 (3.1 ~ 7.26)
도종환	1955	남	시인 민족문학작가회의 부 이사장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 지회 문학위원회 위원장	시
이혜경	1961	여	소설가	소설가	소설
권혁웅	1967	남	평론가 한양여자대학 문예창작과 교수	문예중앙 편집동인	평론
전성태	1969	남	소설가	소설가	소설

2. 시각예술위원회 (7명)

성명	생년	성별	현직	주요 경력	비고
장화진	1946	남	이화여대 교수	-	위원장 회화
김정현	1946	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문화연대 공동대표 공주대학교 교수	회화
최태만	1962	남	국민대 교수	-	조각 평론
김성원	1961	여	에르메스갤러리 디렉 터	-	기획
이경민	1967	남	기획자 아카이브북스 기획위 원	1기 시각예술위원회 위원	기획
김학량	1964	남	동덕여대 전임강사	-	기획
권혁수	1960	남	경원대 겸임교수 디자인사회문제연구 소소장	-	디자인 정책

3. 연극위원회 (5명)

성명	생년	성별	현직	주요 경력	비고
임진택	1950	남	남양주 세계야외공연 축제 집행위원장	민예총 부회장, 세계통과의 레페스티벌 집행위원장	위원장 연출
심재찬	1953	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사무처장	한국연극평론가협회장 극단 전망 대표	연출
허순자	1954	여	서울예대 연기과 교수	'07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	평론
김명화	1966	여	서울산업대 교수	1기 연극위원회 위원	극작.평론
오세곤	1955	남	순천향대 교수	'06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	평론

4. 무용위원회 (5명)

성명	생년	성별	현직	주요 경력	비고
김현자	1947	여	예술위원회 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위원장
정은혜	1958	여	충남대 무용학과 교 수 대전춤목련회 회장	대한무용학회 이사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	한국무용
양정수	1953	여	수원대 무용학과 교 수 (사)한국예술교육학 회 회장	(사)한국현대무용협회 회장 (사) 한국 현대무용진흥회이 사	현대무용
최태지	1959	여	정동극장장	국립발레단장	발레
김승현	1961	남	문화일보 문화부장 무용평론가	문화일보 기자 '05. ' 06년 올해의예술상 심의회원	평론

5. 음악위원회 (7명)

성명	생년	성별	현직	주요 경력	비고
정완규	1957	남	중앙대 음대 교수 예술위원회 위원	한국음악협회 부회장	위원장
이택주	1951	남	이화여대 교수 예술의전당 음악감독	서울시립교향악단 악장	현악
유전식	1951	남	한양대 교수	KBS 교향악단 수석	관악
안두진	1956	남	한서대 교수	한국전자음악협회 회장	이론
백영은	1957	여	단국대 교수	19회 대한민국작곡상 수상	작곡
김태현	1958	남	광주대 교수	루마니아국립오케스트라 지휘	피아노
이나리 매	1968	여	평론/작곡가	전 한양대/계원예고 강사	평론

6. 전통예술위원회 (7명)

성명	생년	성별	현직	주요 경력	비고
한명희	1939	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국립국악원장 서울시립대 교수	위원장
송혜진	1960	여	숙명여대 전통문화예 술대학원 교수	숙명가야금연주단 대표 1기 전통예술위원회 위원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이론 평론
이지영	1965	여	용인대 국악과 교수	오늘의 젊은예술가상(2003) 한국현대음악앙상블 대표 가야금 연주가	가야금
이진원	1969	남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한국고음반연구회 회원 한국통소연구회 이사	이론
김승근	1967	남	서울대 교수	통영국제음악제 사무국장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음악 책임자 1기 전통예술위원회 위원	작곡
이애주	1947	여	서울대학교 체육교육 학과 교수	한국정신과학학회장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 무예능보유자	무용
장경희	1960	여	한서대 문화재보존학 과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1기 전통예술위원회 위원	공예

7. 다원예술위원회 (7명)

성명	생년	성별	현직	주요 경력	비고
전효관	1964	남	전남대 문화대학원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하자센터 부소장 1기 다원예술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김소연	1968	여	컬처뉴스 편집장	영상물등급위원회 무대공연 추천소위원회 위원(02-05) 1기 다원예술위원회 위원	연극 정책
이원재	1972	남	문화연대 사무처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1기 다원예술위원회 위원	정책
오성화	1973	여	서울프린지네트워크 공동대표	올해의예술상 다원예술분야 예심위원(06)	독립예술
이진아	1970	여	숙명여대 국문과 교수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사무국 장 다원예술연구용역 연구원 (06) 다원심의위원(07)	공연
조동희	1970	남	과천한마당축제 홍보 실장	프랑스 샬롱 거리예술 축제 근무(03) 다원심의위원(07)	공연 공공예술
백기영	1969	남	의재 창작스튜디오 디 렉터	1기 시각예술위원회 위원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미술인회의 사무처장	시각 정책

8. 남북및국제문화교류위원회 (7명)

성명	생년	성별	현직	주요 경력	세부분야
박신의	1957	여	-경희대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미술평론가	-위원회 위원, -1기 소위원회 위원	총괄, 시각예술
김형수	1959	남	-민예총 상임이사 -소설가	-1기 소위원회 위원,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	남북교류, 문학
이나리 매	1968	여	-뮤지스튜디오 빈 대표 -작곡가	-07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 -2기 음악분야 소위 위원 -한양대 강사	음악
장광열	1958	남	-한국춤정책연구소장 -무용평론가	-06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	무용
주재연	1965	남	-난장컬처스 대표	-1기 소위원회 위원, -부여사물놀이 대축제 사무국장	전통예술
조동희	1970	남	-과천한마당축제 기획홍보실장	-07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 -2기 다원예술 소위 위원 -프랑스 샬롱거리예술축제 근무(2003)	다원예술
허권	1955	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장	-1기 소위원회 위원	국제기구교 류

9. 지역문화위원회 (7명)

성명	생년	성별	현직	주요 경력	세부분야
박종관	1959	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	지역문화소위원회 위원장 전 민극협 부이사장(05~06)	위원장 문화일반
김기봉	1960	남	지역문화네트워크상임대표	지역문화진흥법 추진위공동위원장 주민통합서비스네트워크 사무총장	문화복지
김선태	1967	남	전주 효자문화의 집 관장	전북 문화시설네트워크 운영위원 놀이패 우리마당 대표	시설운영
김소연	1968	여	컬처뉴스편집장	영상물등급 무대공연추천소위원회위원 (02-05) 1~2기 다원예술소위 위원	공연예술
나호열	1954	남	한국예총기획위원	경희대사회교육원교수 문학평론가	문학예술
박영정	1961	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팀장 (책임연구원)	서울대 건국대 강사 연극평론가	예술정책
신동호	1967	남	대구문화예술 연구소장	리서치21 대표연구원 지역분권 대구경북본부 집행위원	조사연구

10. 예술의사회적역할확대위원회 (6명)

성명	생년	성별	현직	주요 경력	세부분야
박종관	1959	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한국민족극운동협회 부이사장 충북민예총 부지회장 1기~2기 지역문화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문화일반
김정현	1946	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 및 지도위원 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및 대표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미술
양정수	1953	여	수원대 교수	한국예술교육학회 회장	무용
오세곤	1955	남	연극평론가 순천향대 교수	'06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 한국연극평론가협회 부회장 한국연극학과교수협의회 부회장 한국연극학회 감사 한국연극교육학회 부회장	연극
김세준	1965	남	숙명여대 문화관광학과 교수	전 조지아주 사반나미술디자인대학 갤러리 학예연구실장 전 호암미술관 전임연구원 (현대조각) 1기 남북및국제문화교류위원회 위원	예술경영
주홍미	1967	여	공연기획자	-	음악

11. 정책위원회 (6명)

성명	생년	성별	현직	주요 경력	세부분야
강준혁	1948	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장 경기문화재단 세계평화축전 총감독 문화기획자	위원장
박종관	1959	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한국민족극운동협회 부이사 장 충북민예총 부지회장 1기 지역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신의	1957	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1기 남북및국제문화교류위원 회 위원장	
전효관	1964	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동북아시아위원회 사회문화 분과 전문위원 서울시립 하자센터 부소장	
이원태	1961	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기획조정실장)	(사)한국공연예술매니지먼트 협회 이사(현) 국정홍보처 전문가 국정모니 터 위원(현)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수석연 구원	
정재욱		남	(주)크레디아 대표	-	

12. 기초예술의가치확산위원회 (7명)

성명	생년	성별	현직	주요 경력	세부분야
김언호	1945	남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위원 한길사 대표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헤이리 예술마을 이사장	위원장 출판
도종환	1955	남	시인,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이사장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지회 문학위원회 위원장	시
최태지	1959	여	정동극장장	국립발레단장	발레
김성원	1961	여	에르메스갤러리 디렉터	프랑스 파리1대학	전시기획
백영은	1957	여	단국대 교수	19회 대한민국작곡상 수상	작곡
노재현	1958	남	중앙일보 논설위원	중앙일보 문화부장	언론
김광일	1958	남	조선일보 문화부장	조선일보 논설위원	언론

【 부 록 3 】 해외사례 : 잉글랜드예술위원회
(The Arts Council of England)

□ **설 립 : 1946년 (2002.4월 지역예술위원회를 통합)**

○ **설립 근거 및 목적**

- 2002년 6월9일 제정된 칙허의 부칙 (Supplemental Charter)에 명시, 이는 1994년 제정된 칙허(Royal Charter)의 내용과 동일
 - ① 예술에 대한 지식, 이해, 실현의 증진 및 개선
 - ② 잉글랜드 지역내 대중들의 예술 접촉기회 확대
 - ③ 위의 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 부처, 지방당국,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아일랜드 등의 예술위원회, 기타 기관들에 대한 협조 및 자문업무

□ **재원 및 지원내용(2001/02 회계연도)**

: 정부보조금과 국립복권기금의 지원액을 합쳐 총 £ 402,330,000

- 정부 보조금사업 : 총 £ 239,407,000
 - 예술분야별 지원액 : £ 131,427,000 (54.9%)
 - 지역예술위원회 지원액 : £ 107,980,000(45.1%)

< 도표 1 > 01/02회계연도 예술분야별 지원내역

(단위 : 천파운드)

분 야	지원액	비 율	비 고
○ 관객개발(Audience Development)	1,262	1.0%	
○ 협력예술(Collaborative Arts)*	436	0.3%	
○ 복합예술(Cross-Artform)**	41,275	31.4%	
○ 무용(Dance)	17,634	13.4%	
○ 연극(Drama)	30,289	23.0%	
○ 문학(Literature)	1,469	1.1%	
○ 음악(Music)	29,911	22.8%	
○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1,551	1.2%	
○ 순회사업(Touring)	2,117	1.6%	
○ 시각예술(Visual Arts)	5,483	4.2%	
합 계	131,427	100.0%	

- 국립복권기금사업 : 총 £ 162,833,277

- 문화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자본보조사업이나 전국순회사업 및 지역 중심의 향수자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문화예술 단체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등 광범위한 사업을 지원

< 도표 2 > 01/02회계연도 국립복권기금사업 지원내역

(단위 : 천파운드)

분 야	지원액	비 율	비 고
○ 모두를 위한 사업(Awards for all)	6,174	3.8%	
○ 자본보조사업(Capital)	75,679	46.5%	
○ 지역예술복권사업(RALP)	28,043	17.2%	
○ 회생프로그램(Recovery)	10,529	6.5%	
○ 안정화프로그램(Stabilisation)	20,630	12.7%	
○ 전국순회사업(National Touring)	9,547	5.8%	
○ 청소년음악기반조성사업 (National Foundation for Youth Music)	10,000	6.1%	
○ 체육·예술문화공간 지원 (Space for Sport & Arts)	2,231	1.4%	
합 계	162,833	100.0%	

□ 조직구조 : 비정치적 독립 법인

" an independent, non-political, non-departmental public body working at arms length from the Government "

○ 중앙위원회 (National Council)

- 통합기구인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최고 정책결정기구(governing body)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
- 위원장 및 위원 : 문화매체체육부(Ministry of Culture, Media and Sports) 장관 임명 (무보수 4년 임기, 중임가능)
- 구성 : 15명 중 9명은 지역예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예술 장르를 대표하지 않음.
- 역할 : 연간 약 5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국가 차원의 예술정책 수립과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및 재정 전략을 비롯하여 기관의 사업과 예산 승인 등 기관운영의 주요사항을 결정

○ 지역예술위원회 (Regional Arts Councils)

- 9개 지역에 설치되며 각 지역예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됨. (동남부예술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

- 지역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며 4년 임기로 문화매체체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임명
 - 15명의 위원 중 6명은 지방정부대표로 구성되며 9명은 지역 내 문화예술계, 학계, 언론계 등 이해당사자 집단에서 선정
(동남부예술위원회는 20명의 위원 중 지방정부대표는 8명)
 - 역할 : 예술정책의 큰 틀 아래 지역 차원의 예술정책 수립과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및 재정 전략을 비롯하여 해당 지역예술위원회의 사업과 예산 승인 등 중요사항을 결정
- ※ 중앙위원회는 지역예술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되 중앙위원회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권한을 가짐

〈 도표 3 〉 지역예술위원회의 지리적 영역

Arts Council England regions



○ 집행부(Executive Board)

- 사무총장(Chief Executive)과 13명의 Executive Director로 구성
 - 지역예술위원회의 사무총장(9명)
 - 중앙위원회의 예술(Executive Director of Arts), 홍보(Executive Director of Communications), 재정&운영(Executive Director, Finance and Operations), 연구&개발(Executive Director, Research and Development) 등 분야별 책임자(4명)

- 사무총장 (Chief Executive) : 위원회 지명 → 문화매체체육부장관 승인
- 직원(Staff) : 20개 오피스 총 169명(지역위원회 포함 700명 내외)
- ※ 예술행정 집행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은 Chief Executive와 집행부 전담

[ACE 조직체계]

- 최고정책결정기구 : 위원회(위원장)
- 집행부 : 사무총장, 디렉터(4명)
- 부서조직 : 14부
 - 관리부서 : 사업평가 및 기획부, 인사관리부, 정책조사연구, 대외홍보부, 출판 및 도서관서비스부
 - 예술지원부서 : 복합예술부, 무용부, 연극부, 문학부, 음악부, 순회부, 시각예술부
 - 국립복권기금부

□ 운용 절차

- 지원신청 → 스태프의 리뷰 → 지원규모에 따라 단계별 결정권한 부여
- ※ 예시) 예술지원프로그램(Grants for the Arts)의 경우
 - 지역예술위원회 : 종합 분석보고
 - 집행부(사무총장) : £ 250,000 이상 개별지원금 집행
 - 국장급(Executive Director) : £ 250,000 ~ £ 25,000 개별지원금 집행
 - 부서장급 (Director) : £ 25,000 이하 개별지원금 집행

□ 정부와의 관계

- ‘팔길이원칙’에 의거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비정부기관
- 지배구조는 칙허에 포괄적으로 명시된 사항 이외는 없으며 재정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문화매체체육부장관과 위원회 위원장간의 재정지원협약서 (Funding Agreement)를 체결하여 구체적인 권한과 위임정도를 규정
- ※ 재정지원협약서(Funding Agreement)의 내용
 - 포괄적인 문화매체체육부의 정책목표와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정책 목표가 명기되며 향후 3년간의 정부재정 지원규모 등 기술
 - 협정기간 동안 잉글랜드예술위원회가 달성하여야하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등도 포함됨.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정기지원예술

단체(Regularly Funded Organisations)의 관람객수를 2004년도까지 500,000명 이상 증가시킨다든지 순회공연전시사업의 수를 늘린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기술하고 있음

□ ‘03~’ 06년의 예술정책 추진방향 “Ambitions for the Arts”

○ “Ambitions for the arts”

- 2002년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대대적인 개혁이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야심 찬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영국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예술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 복권기금을 포함하여 4개년간 총 20억 파운드 의 예산을 배정함.

○ 2003-2006 예술위원회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

- 개인 예술가 지원 우선
- 지원단체와의 관계 개선을 통한 예술단체 육성 지원
- 문화적 다양성 보장
- 청소년과의 창조적 유대관계 확충
- 예술 증진 극대화

영국 문화부(DCMS)와 예술위원회(ACE)
관계가 주는 시사점

□ 기능 분담

- DCMS
 - 문화예술에 관한 국가 정책 틀 형성
 - 제도 개선
 -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한 기구·단체 상호간 조정·협력 도출 (Networking)
- ACE
 - 예술지원금 사용과 지원대상 설정 등에 관한 결정·집행권

□ DCMS와 ACE의 관계

▶ 기본 원칙

- 팔거리 원칙에 입각하여 정부는 재정지원 결정과정에 직접적 간섭은 하지 않음
- 다만, 공공재원의 책임성·효과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 ‘지원하되 간섭은 않는다. 그러나 관리는 한다’
(Taylor Andrew/ “arm’s length but hands on“)

▶ DCMS의 ACE 관리 수단

- 지원협약서 체결(Funding Agreement)
 - 3년 단위로 체결, 연도별 보조금 지급 규모, 지원목표, 성과지표, 세부지원 목적, 전략적 평가, 성과관리 등 명시
- ACE 구성에 관한 권한
 - 장관이 위원회 의장 및 위원, 사무총장(5년임기) 임명권 보유
- 평가, 회계 감사

【 부록 4 】 위원회 전환에 대한 문화예술인 의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환에 따른 문화예술계 연합성명서

- 문화예술정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환영한다!!
- 국회는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하였다. 그동안 위원회 전환에 대하여 문화예술계에서 여러 가지 논란과 더불어 우려의 시선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술인들이 이러한 뜨거운 논란의 과정에 참여한 것은 위원회 전환에 대한 예술인들의 기대를 드러낸 것이며, 예술계의 건강한 발전을 바라는 열망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 예술인들은 이러한 논의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번 국회 상정을 계기로 문화예술계의 중지를 모아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은 문화적 다양성, 창의성, 자율성 신장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문화예술의 진흥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기치로 탄생했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은 지난 30년간 경제 지상주의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예술인들의 창조적 활동에 일정 부분 동반자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러나 문예진흥원은 그동안 현장예술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국가 시책의 뒷바라지에 더욱 많은 관심을 쏟아왔다. 열악한 기금을 나눠먹기식의 소액다건주의로 배분하다 보니 지원의 효과나 예술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고 심지어 ‘푼돈이나 나누어주는 기관’이라는 비난까지 받아야 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GNP가 3.5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규모는 여전히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10년 이상 2~300억 원대에 그대로 묶여 있는 문예진흥기금의 현황은 정체된 우리 문화예술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이 정도의 수준이나마 유지될 수 있었던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이 2003년 12월로 폐지됨에 따라 문예진흥기금 재원의 확보가 절체절명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확보된 재원을 합리적·효율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예술계 발전을 위한 기금집행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은 ‘예술가와 지원 기관의 상호 신뢰 속에서 새로운 예술진흥 정책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필연이다.

물론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이 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한 우리의 견해는 대다수 국민의 실질적인 호응을 얻으리라 확신한다.

첫째, 문예진흥원은 다양하고 복잡해진 예술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틀로 거듭나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제 독립제 구조의 문예진흥원 틀 아래서 급변하는 문화환경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점에 다다랐다.

둘째, 그동안 문예진흥원이 단순분배식 지원을 주요 임무로 한 기구였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예술지원 정책에 의한 적극적이고 선택적인 기획지원을 주요 임무로 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문예진흥원은 나눠먹기식 기금 배분기구가 아닌 예술진흥 중추기구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그 근원적인 처방이 바로 현장 문화예술 전문인들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인 것이다.

셋째,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문화예술계의 현안을 논의하고 지원정책을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위원회 제도야말로 예술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요구하는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 주도의 문예진흥원이 민간 주도의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을 넘어 새로운 예술정책을 정립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넷째,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정치·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예술적 가치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어느 나라나 이를 위해 예술지원 기구를 정부조직과 독립하여 존재토록 하고, 정부는 지원정책 결정 및 집행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견지하고 있다.

새로 출범할 문화예술위원회는 이러한 ‘팔 길이 원칙’에 충실한 기구로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기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예술정책을 원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새로운 예술정책의 출현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그동안 참다운 의미의 예술정책이 있었는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문화예술 정책이 입안되어 발표되곤 하였으나, 실제로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술정책은 드물었다. 현재까지의 정책은 예술인들이 요구하는 실제적 측면과 상당 부분 괴리되어 문화백년대계(文化百年大計)로서의 예술정책 토대를 쌓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가 현장 문화예술 전문인이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무척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위원회 구성, 위원 선임 방법, 위원회 운영 방안, 책임성 및 효율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왔고, 이 과정에서 문화관광부가 관습적인 벽에 부딪혀 명쾌한 대처를 하지 못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예술인들이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제기하는 등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문화관광부가 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인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문화예술인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설립 준비 과정에 만전을 기할 것도 함께 촉구한다.

특히, ‘설립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예상되는 몇몇 시행착오가 우려된다’ 고 해서 설립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자기 편의주의에 의한 과거지향적 사고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관광부에서 임명한 원장 및 사무총장이 문예진흥원 운영 및 문예진흥기금 배분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는 일인 지배의 수직적 의사 결정 제도인 독임제’ 를 ‘다수의 민간예술인들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원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민간인 위주의 제도’ 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제안된 것이다.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예술가가 참여하는 예술 지원 정책을 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획기적인 진전이요 정책의 발전의 새로운 도전이라 하겠다. 이러한 도전은 향상된 국민정체성을 뚜렷이 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줄 것이 확실하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편리주의에 편승해 새로운 예술계 분위기가 침체된다면, 새로운 예술정책을 원하는 전체 예술인의 순수한 열망을 저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에 힘을 모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은 절실한 시대적 과제이며, 문화발전을 위한 기본적 토대이다.

2003년 11월 25일

문 화 예 술 계 일 동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총/ 회장 이성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예총/ 회장 김용태)
대학로포럼 (대표 한상철)
문화연대 (대표 김정현)
한국국악협회 (대표 이영희)
한국무용협회 (대표 조홍동)
한국문인협회 (대표 신세훈)
한국미술협회 (대표 곽석손)
민족건축인협회 (대표 양상현)
민족굿위원회 (대표 김남수)
민족문학작가회의 (대표 염무웅)
민족미술인협회 (대표 김인순 주재환)
민족사진가협회 (대표 김영수)
민족서예인협회 (대표 여태명)
민족영화인위원회 (대표 김동원)
민족춤위원회 (대표 김채현)
ITI(국제극예술협회)한국본부 (대표 양혜숙)
연극배우협회 (대표 허연호)
서울시공연장협의회 (대표 정재진)
한국건축가협회 (대표 오기수)
한국공연예술원 (대표 김천홍)
한국민족극운동협회 (대표 채희완)
한국민족음악인협회 (대표 오용록)
한국사진작가협회 (대표 백영환)
한국연극협회 (대표 최종원)
한국연극연출가협회 (대표 심재찬)
한국연예협회 (대표 김남진)
한국음악협회 (대표 김용진)
미술인회의 (대표 성완경)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금번 임시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법 문화예술계 탄원서**

우리 문화예술계는 오래전부터 문화예술 현장의 의견이 문화예술 지원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관료적 운영체제인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인들의 자율적인 합의체기구인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문예진흥원의 위원회 전환 논의는 이미 2001년 6월 14일 한나라당, 민주당의 국회 공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며, 이후 여러 차례 문화예술계의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2003년 11월 17일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벌써 4개월이 가깝도록 개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뚜렷한 이유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된 이후에도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뜨거운 관심과 법 문화예술계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에는 예총·민예총을 비롯한 29개 주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계의 중지를 모아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적극 지지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하였고, 법 개정안의 통과가 지연되자 금년 2월 27일에는 법 문화예술계 40개 단체와 3천5백여명의 문화예술인들이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지지서명을 하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월 25일에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술인으로 참여한 예총, 민예총 대표 등 각계 문화예술인들이 개정안의 회기내 조속 처리를 요청하면서 개정안과 관련된 국회의 어떠한 제안사항에도 동의할 것임을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소집된 정부와 3당 법안소위 실무자간 법안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조정을 거쳐 완전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만 개최되어도 본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음에도 국회 일정상 어려움과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예술계의 최대 현안이며 민생법안인 동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처리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본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바, 이 법의 통과를 열망하는 문화예술계 전체의 공분과 국회에 대한 불신감이 극에 달한 실정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은 그간 문화예술계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지지해온 것으로,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부응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진 문화 예술인과 예술계 현장 중심의 문예지원 정책을 구현함으로써 낙후된 문화정책과 행정의 틀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금번 국회 회기 내에 꼭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에 대한 범 문화예술계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목소리를 내던 문화예술계가 처음으로 한데 모여 같은 목소리를 내어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위원회 전환에 대한 범 문화예술계의 열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켰던 위원회 위원 선임방법 등 법안의 중요 쟁점에 대해 정부와 문화관광위 법안심사 소위의 여야 실무자간 의견 조정이 이미 끝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미룰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문화예술위원회 전환 논의가 이미 1년여의 기간을 보낸 상황에서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폐기되고 다시 원점에서 차기국회로 넘겨진다면, 문화관광부의 직무 조정 등 위원회 전환과 연계된 예술정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됨과 아울러 모금폐지에 따른 대체 재원확보, 2004년, 2005년 복권기금의 문화예술재원 확보 등 산적한 현안에 효율적인 대처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등 위원회 전환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고 또 한해를 위원회 전환 논의에 묻혀 보낼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넷째, 2003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문화예술인의 70%가 월평균 100만원 이하의 창작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예술인의 사회적 평가나 작품 발표 기회가 더욱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예술의 위기가 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문화예술계에 상당한 좌절감을 안겨줄 것이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함께 창작의욕의 저하 등 문화예술계가 극도로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단순히 문화예술계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그 동안 굴절된 문화정책을 바로잡고 성숙한 시민사회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의 처리가 단순한 당리당락을 떠난 국가 대계의 문제

임을 각별하게 인식하여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개정 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청하오니 부디 문화예술계의 열의와 여망을 이루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2004. 3. 5

범 문화예술계 일동

(서명 참여 40개단체, 3,500여 문화예술인 명부 별첨)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지지서명 참여 40개 문화예술단체

(무 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총/ 회장 이성립)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예총/ 회장 황석영)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전국 범예술인연대
대학로포럼 (대표 한상철)
문화연대 (대표 김정현)
미술인회의 (대표 성완경)
민족건축인협회 (대표 양상현)
민족굿위원회 (대표 김남수)
민족문학작가회의 (대표 염무웅)
민족미술인협회 (대표 여 운)
민족사진가협회 (대표 김영수)
민족서예인협회 (대표 여태명)
민족영화인위원회 (대표 김동원)
민족춤위원회 (대표 김채현)
연극배우협회 (대표 허연호)
서울시공연장협의회 (대표 정재진)
한국건축가협회 (대표 윤석우)
한국국악협회 (대표 이영희)
한국무용협회 (대표 조홍동)
한국문인협회 (대표 신세훈)
한국미술협회 (대표 하철경)
한국민족극운동협회 (대표 채희완)
한국민족음악인협회 (대표 오용록)
한국사진작가협회 (대표 백영환)
한국연극협회 (대표 이종훈)
한국연극연출가협회 (대표 심재찬)
한국연예협회 (대표 석 현)
한국음악협회 (대표 김용진)
국제팬클럽 한국본부(대표 성기조)
진정한 문화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연극과 교수 연대
서울연극협회(대표 채승훈)

충남연극협회(대표 오태근)
공연예술매니지먼트협회(대표 강석홍)
여성문화예술기획(대표 이해경)
우리만화연대(대표 주완수)
전국언론노동조합(대표 신학림)
광주문화포럼(대표 김정주)
한국독립영화협회(대표 황철민)
스크린쿼터문화연대(대표 유지나)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대표 조봉호)

문화예술인 서명자 명단 (총 3500여명)

(1차 서명 3,000여명 2차 서명 500여명/ 명단 생략)